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국제사회의 질서와 정의

-Hedley Bull 과 John Rawls 논의의
연관 분석-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임 선 희

국 문 초 록

이 논문의 주장은 헤들리 불과 존 롤즈의 논의를 상호 연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구상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통의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사회’가 지속되는 한, 국제 질서와 국제 정의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국가와 인류의 공통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행하고자 하는 역사 해석적 접근법과 구성주의 철학의 접근법의 결합은, 사실과 규범의 연관성 포착을 위한 일종의 ‘이중적 관점 (dual perspective)’이다.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본질과 그 작동 원리 및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갖는 것은 물론, 역사적 상상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보다 나은 질서를 구성해 나가는 미래적 지향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국제질서 확립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인권의 수호와 주권의 존중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와 하는 우선순위 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 인권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 및 주권 개념의 협소성 및 이들 간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정의로운 국제질

서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상호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질서와 정의 간 충돌 문제와 딜레마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국제사회, 질서, 정의, 헤들리 불, 존 롤즈, 인도적 개입
학 번: 2011-23178

목 차

| | |
|-------------------------------------|----|
| 1장 서론 | 1 |
| 1. 문제제기 | 1 |
| 2. 기존 연구 검토 | 9 |
| 3. 연구 개요 및 논문의 구성 | 13 |
| 2장 예비적 고찰 | 17 |
| 1. 불: 다원주의에서 연대주의로 | 17 |
| 2. 롤즈: 정치철학의 역할 | 22 |
| 3장 국제사회의 질서, 제도, 규범 | 28 |
| 1. 국제사회의 질서와 제도 | 28 |
| 2. 질서 유지를 위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 | 34 |
| 4장 국제정의원칙의 합의 구상 | 41 |
| 1. 이상적 이론 | 41 |
| 2. 비이상적 이론 | 51 |
| 5장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가능성: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 62 |
| 1. 주권과 인권의 갈등 | 62 |
| 2. 질서와 정의의 상보성 | 71 |
| 6장 결론 | 77 |
| 참고문헌 | 82 |

1장 서론

1. 문제제기

국제정치학적 개념으로서 무정부 (anarchy)는 주권국가 위에서 어떠한 주권적 권력도 법률 제정, 분쟁 해결, 약속과 조약의 준수 및 위반을 강제 혹은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해된다.¹⁾ 이처럼 세계정부와 같은 전 인류 공동의 상위 권위체 혹은 통치체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국제정치 무대는 늘 무정부 상태이어서 왔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도 역시 세계정부 등장의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래 국제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 또는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로 집중해 왔다. 이처럼 국제 영역에서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은 일종의 과제이자 목표로 여겨져 왔다. 대표적으로, 현대 국제관계 이론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해온 미국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behavioral realism) 진영은 이와 관련하여 평화 및 세력 균형을 종속 변수로 놓고 독립 변수로서의 권력 배분 상태에 주목하며 가치중립적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

1) Robert Art and Robert Jervis, *International Politics: Enduring Concepts and Contemporary Issues* (Boston: Harper Collins, 1991), pp.1.

2)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50년대 중반 모튼 카플란 (Morton Kaplan) 을 위시한 국제관계학자들이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국제관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그들은 인간본성에 관한 주장 및 역사적 사례에 기반한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국제관계학 역시 관찰과 검증 및 일반화의 방법론을 차용함으로써 현실

하여, 국제정치학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이면서 포괄적 논의를 비껴가고 있다는 비판³⁾ 및 그 패러다임과 인식론적 틀의 제한성에 대한 지적⁴⁾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구조개념에 입각해 국제정치 현실을 단순화함으로써 국가들의 행위를 예측하고자 하는 일반화의 이론적 간결성 및 체계성 이면에 존재하는 적실성의 문제 역시 제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주의가 아마도 국제 관계의 어떠한 현실을 포착할지는 모르지만, 그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논리적으로는 우아하지만, 사실 아무도 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해 내고 있다." ⁵⁾ 는 지적 역시 있었다.

무정부 상태를 무질서 (disorder) 내지 혼돈 (chaos)과 등치시킬 수 있는가? 국제관계의 주류적 시각은 합리적 행위 주체로서의 국가가 힘과 이익을 중시하며 영토성과 민족성에서 파생되는 배타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고 상정하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에서의 국가들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며 무질서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제정치가 전적으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

설명력 및 미래 예측력을 보유한 과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 3) Fred Halliday,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ears and Hopes,"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s Zale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4) Lapid Yosef,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1989)
- 5) Donald J. Puchala, "Making a Weberian Moment: Our Discipline Looks Ahead."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1 No.2 (2000) pp.138.

는 흡스적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 이념, 문화를 비롯한 국가 • 비국가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교통 • 통신 수단의 발달,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보편화, 다양한 국제 레짐 창출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국제정치의 시스템적 접근 하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의 유기체성만을 강조하여 국제정치의 제도화 국면을 현상 위주로 파악한 결과 그 규범적인 측면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다.⁶⁾ 이처럼 분명히 존재해 온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규범적이지 구성적이고, 따라서 이들이 기존의 객관화된 시스템적 연구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면, 이를 포착하기 위해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에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시스템 속에 언제나 '사회 (society)'적 요소가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 헤들리 볼 (Hedley Bull)의 연구에 주목해 볼 만하다.⁷⁾ 그는 1958년 결성된 영국국

6) 송기돈. “국제정치의 사회성 (sociality)에 관한 이론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2002) pp.341.

7) 현실주의 이론이 관심을 두지 않는 국가 간의 규범 및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는 국제관계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대논쟁들 (Great Debates)’을 참고함으로써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유주의 이론으로, 1930-40년대 ‘제1차 논쟁’에서 현실주의와 대립하였고, 이후 기능주의 • 상호의존론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둘째는 국제사회학파의 이론으로, 헤들리 볼이 1966년 카플란의 행태주의 논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2차 논쟁’을 구성하였다. 셋째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실증주의 대 탈실증주의 간 ‘제3차 논쟁’을 바탕으로 이론적 종합을 시도하면서 대두한 구성주의 이론으로, 이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의미를 분석 개념으로 삼고 국제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대안적 이론들 중 특히 국제사회학파의 논의에 집중하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무정부 상태를 초국가적 통합을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자유주의 논의와 달리, 국제사회학파의 논의는 무정

제정치이론위원회 (British Committee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의 핵심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international society)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분석을 주도하였다. 국제사회학과 (International Society School) 혹은 영국학과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들은 주로 미국의 과학적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국제관계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간 역사의 특수성과 인간 행위의 독자성에 기반하여 해석학적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불은 카플란의 논의를 비판하는 논문인 <International Theory: A Case for Traditional Approach (1966)>을 발표하면서 이른 바 ‘제2차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역사 • 철학 • 법 연구에 근간한 전통주의적 접근 (traditionalism)을 옹호하고 과학적 행태주의 (scientific behavioralism)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그는 1977년 출간한 <무정부 사회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를 통해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체계 내에서 국제사회적 요소가 어떤 양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를 지탱하는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를 선보였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무정부적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빈번히 충돌해 온 주권과 인권의 대립적 위상, 그리고 이를 표상하는 가치인 질서와 정의 사이의 본질적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여기에 관

부 상태 내에서의 질서를 표방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들의 목적론적 집단정체성 형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물리적 차원의 집단안보 달성을 지향하는 구성주의와 달리, 국제사회학과의 논의는 국가들 간 규범 및 제도를 통해 주권과 인권의 조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주제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비록 국제 질서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 한에서 정의의 문제를 논하고는 있으나, 가치중립적 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엄연한 국제정치의 현상적 문제를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대국들의 일방주의, 국제 테러리즘, 절대적 빈곤,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꾸려갈 삶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다차원적 요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영향이 전 세계에 뻗어 가고 초국적 지구시민사회가 낱알이 성장해 가면서, 초국적 사회운동 주체들, 정부 간 조직들, 국제적 비정부기구들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확대되어 가고 인권 체계가 분화되면서, 기존에 영향력을 인정받지 못해 온 약소국·민족 집단 등이 정당한 참여와 인정(recognition)을 보장받기 위한 시도를 개진하고 있다. 정의의 문제가 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른 최근의 현실적 경향은 국제 질서와 정의라는 두 가치의 문제가 동떨어진 채로 생각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때문에 질서와 정의라는 두 가치가 별개의 것이라거나 혹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위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지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두 가치들을 보완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정의로운 국제 질서' 실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물론 적실성 있는 미래지향적 구상을 모색하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 '대대적인 변혁과 새출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안이

아니다.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대안은, 국제사회의 현실적 조건과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역사 속 실패의 선례들을 피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존과 협력의 방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불이 경험주의 (empiricism) 인식론 및 실증주의 (positivism) 방법론에 주로 기반하여 역사 속에서 국제사회 제도 및 작동 원리와 같은 현실적 측면들을 포착하면서, 국제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규범적 과제를 발견해 내고 이를 촉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가 제시한 이 과제란, 바로 국제사회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의 관념 (conceptions of justice)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적 프레임 속에서 질서와 정의라는 두 가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고와 접근 방식의 결합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정의관의 합의 구상, 나아가 정의로운 질서의 모색과 같은 과제는, 불의 연구에서는 구체적 •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은 채 단지 그 필요성만 논의된 미완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국제사회 정의 원칙의 합의를 기획한 존 롤즈 (John Rawls)의 <만민법 (The Law of Peoples, 1999)>구상을 함께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롤즈는 정치철학자로서 논리적 구성에 의해, 정의로운 국제 질서 (a just international order) 수립을 만민법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접근방식은 분명 국제정치학자인 불의 역사 해석적 방법론과는 명백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두 학자의 기본적인 출발점 및 문제의식, 철학적 기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연관 고찰의 가능성을 발견해 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두 논의가 이러한 연관 분석을 통하여 그 의의를 새로이 발견하고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도해 볼 만하다. 롤즈는 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국가들이 이루는 '사회'를 기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국제사회정의 원칙의 적용 및 확대를 기획하고 있다. 그의 구성주의적 정의관 (constructivist conception of justice)은, 이론 이성 (theoretical reason)에 입각한 몰역사적이고 선형적인 도덕적 질서의 일부로서가 아닌, 실천 이성 (practical reason)의 작용에 근거한 구성적 절차의 결과로서 정치적 정의 원칙들을 도출해 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그는 자신이 행하는 정치 철학의 과제로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realistic utopia)'를 제시하면서, 국가들의 정치적 노력의 장기적 목표를 제공하고, 우리의 사회 세계와 이러한 이상향을 '화해 (reconciliation)'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는 전적인 홉스적 현실주의 시각을 거부하면서도 현실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간 본성을 채택하는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의 정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전세계 인류의 평등을 지향하는 혁명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거부하면서도 범위상 전지구적이며 객관적 정당화가 가능한 정의 원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기획하였다.⁹⁾ 이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권력과 도덕, 질서와 정의, 구조와 행위자, 이론과 역사 등과 같은 대립항 중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딜레마를 국제정치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조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불의 접근법과 유사하다.¹⁰⁾ 이러한 현실적

8) Rex Martin and David Reidy, *Rawls's Law of Peoples: A Realistic Utopia* (Wiley, 2006), pp.11.

9) Martin and Reidy, 2006, pp.7.

10) 마상윤,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세계정치 10』 제29집 2호 (2008), pp.49.

조건의 인정을 전제로 현실의 점진적 개선을 모색하는 입장은 롤즈와 불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나며, "유토피아와 절망 사이에 제3의 길이 있다. 그것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11) 라는 국제사회학파의 기본적 접근 방식 역시 롤즈의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구상과 맥이 닿는다. 이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현실적 구상으로서, 국제 정치 역사 속에 존재해 온 질서에 관한 연구와 연관시켜 고찰해 볼 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현실적 가치의 충돌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질서가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경우,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주는 규범적 • 처방적 연구는 우리에게 좋은 밑그림이 되어줄 수 있다.

학문이 단지 학문을 위한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 이상 도외시킬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의 이론들로부터 보다 다각적인 견지와 실천적 함의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행하고자 하는 역사 해석적 접근법과 구성주의 철학의 접근법의 결합은, 사실과 규범의 연관성을 포착하기 위한 일종의 ‘이중적 관점 (dual perspective)’ 12) 이다.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본질과 그 작동 원리 및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갖는 것은 물론, 역사적 상상력의 한

11) A.J.P. Taylor, *Rumours of Wars* (London: Hamish Hamilton, 1952), pp. 262; Martin Wight, *International Theory: The Three Traditions*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1), pp.29에서 재인용.

12) 이는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가 제안한 관점으로, 그는 저작인 *Between Facts and Norms* (1992)에서 법의 규범적이고도 사실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하여 규범철학적 • 사회학적 접근법을 결합한 이 이중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계에 갇히지 않고 보다 나은 질서를 구성해 나가는 미래적 지향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 왔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두 학자의 주요 저작인 <무정부 사회>와 <정치적 자유주의> 및 <만민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저작 전반에 기반하여 연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헤들리 불의 연구 업적은 영국 국제사회학과의 연구의 기본 틀이자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그가 속해 있던 영국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학과의 신진 멤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관심 영역을 넓혀 가며 국제사회에 대한 규범적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학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작들, 그리고 불의 업적 및 그가 학파와 국제정치학계에 미친 영향력 등에 대하여 회고하고 평가하는 저작들을 계속해서 활발히 발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연구들로는 국제사회학과의 이론에 대한 망라와 함께 세계화의 사회적 구조에 대해 논의한 배리 부잔 (Barry Buzan 2004), 헤들리 불의 국제사회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카이 앨더슨과 앤드루 허렐 (Kai Alderson and Andrew Hurrell 2000), 국제사회론 및 그 비평에 대해 논의한 알렉스 벨라미 (Alex J. Bellamy 2005)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벨라미 (Alex J. Bellamy

2009, 2011)는 신진 연대주의자로서 최신 국제정세에서 광범한 논란을 점화시키고 있는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 테러리즘 등의 이슈들에 대해 국제사회학과 고유의 이론 틀로, 특히 연대주의자의 시각으로써 이를 설명하고 평가 및 전망을 시도하는 등 빠르게 변모해 가는 국제사회에 대한 분석을 주도해 가고 있다. 한편 최근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제정치의 문화적 • 규범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학과 그리고 헤들리 불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구성주의의 전조로서 국제사회학과를 해석하고 이 두 이론들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논의로 크리스티안 르슈밋 (Christian Reus-Smit 2002, 2009)을 참고해 볼 만하다. 한편 모든 국제정치현상은 본질적으로 윤리적 현상이라고 주장한 크리스 브라운 (Chris Brown 1992)은 정치철학과 국제관계학의 통합을 제안하며 기술적 (descriptive)이고도 규범적 (normative) 성격을 갖는 국제사회학과 이론 및 헤들리 불의 논의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한다.

국내에서의 불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양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불과 국제사회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평가를 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로는 마상윤 (2008)을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학과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집중하여 국제사회학과를 재조명한 황영주 (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학과와의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유럽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양오석 (2006), 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화를 분석한 장인성 (2006)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한편 존 롤즈의 철학과 연구 업적에 대한 총체적 소개와 회고, 재해석 등을 담은 연구는 주로 롤즈의 제자인 토마스 포저

(Thomas Pogge 1989, 1994, 2007)가 주도하였다. 이 외에도 새뮤얼 프리먼 (Samuel Freeman 2003, 2007)의 저작을 참고해 볼 만하다. 특히 롤즈의 국제정의관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냉전 종식 이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논쟁을 촉발한 것이 바로 롤즈의 *The Law of Peoples* (1999)이었다. 롤즈의 만민법 기본 구조 및 원칙, 인권 관념, 외교 정책 이념, 분배 정의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 연구들로는 렉스 마틴과 데이비드 레이디 (Rex Martin and David Reidy 2006), 찬드란 쿠카타스 (Chandran Kukathas 2003), 폴 보이스 (Paul Voice 2013) 등이 있다. 한편 이 저작에 대한 평가가 비평과 변론으로 크게 양분되면서 관련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더불어 국제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분화 • 발전되었다.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특히 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 탈민족국가이론 (post-nationalism), 초민족국가이론 (trans-nationalism) 등 다양한 이론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졌는데, 이들은 롤즈를 재해석 • 비판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현실을 고려한 저마다의 정의 구상을 시도하며 여러 저작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요 비평들로는, 자원 재분배 원칙 (the resource redistribution principle) 및 지구적 분배 원칙 (global distribution principle)을 주창하면서 롤즈의 차등원칙을 전지구적으로 적용하여 사회들 간의 분배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베이츠 (Charles Beitz, 2005), 지구적 평등주의 원칙 (global egalitarian principle)을 주창하고 이 목적을 위해 운용할 국제 자금을 각 사회가 불입하도록 하는 전

체 자원 배당 (Global Resource Dividend: GRD) 구상을 내놓은 포거 (Thomas Pogge 1994, 2000), 자원 재분배 및 인도적 개입의 한계 및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적 절차의 도입을 주장하는 대럴 뮐렌도르프 (Darrel Moellendorf 1996)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롤즈를 변론하는 입장들로는 레이프 웨나르 (Leif Wenar 2002), 데이비드 레이디 (David Reidy 2004, 2007), 조셉 히스 (Joseph Heath 2007)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롤즈의 만민법에 대한 개괄 및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서 장동진 (2001), 정태욱 (2001), 최기성 (2009)을 들 수 있다. 특히 칸트의 도덕적 기획과 차별화 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롤즈의 만민법 구상을 분석하고 있는 장동진, 장휘 (2003)의 연구에 주목해 볼 만하다. 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천착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롤즈의 국제정의 논의에서의 관용을 주제로 한 목광수 (2010)의 연구, 롤즈 및 그의 비판자인 포거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원조의 윤리학을 다룬 김준석 (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불과 롤즈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상의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발견해 낼 수 있는 경향은, 우선 불에 대한 연구의 경우, 불이 질서의 가치를 정의에 우선시하는 다원주의자로서 국제사회의 제도를 분석한 시기의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의 연대주의자적 전환 및 정의 가치 중시의 면모가 드러나는 후기 저작들에 대한 연구는 적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이르는 저작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의 사상 체계가 주는 총체적 함의를 보다 명확히 포착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롤즈에 대한 연구의 경우, 대체로 구체적인 만민법 원칙들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편, 만민법 구상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롤즈의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모색의 정치철학이 현재의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재성찰해 봄으로써 롤즈 논의 자체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연구는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불의 사상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더불어 롤즈의 정치철학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불과 롤즈 논의의 연관 분석이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모색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아직 이러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은 바, 이를 통해 정의로운 국제 질서 수립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개요 및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주장은 불과 롤즈의 논의의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정의로운 국제질서 (a just international order) 구상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학자 논의가 왜 • 어떤 지점에서 접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불은 경험주의 인식론과 실증주의 및 역사 해석적 방법론으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였고,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의 철학적 방법론으로 정치철학을 연구한 바, 각기 독자적 영역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접근 방식을 보이기 때문에, 두 논의의 보완 및 연계 가능성이 일견 요원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학자의 기본적인 연구 출발점, 철학적 기반, 그리고 연구 생애에 걸친 사상의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봄으로써 이들 논의의 연관 고찰이 어떻게 가능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헤들리 불의 경우 전 연구 생애에 걸친 사상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중기, 후기 저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추적,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의 사상 및 문제의식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의 논의와 존 롤즈의 논의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그러한 접점을 중심으로 롤즈의 기획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롤즈 만민법 구상의 기초가 되는 그의 이전 저작들을 함께 검토하며 분석하고, 이러한 연관적 논의가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불과 롤즈가 각자의 저작에서 서로의 논의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의 논의의 검토를 통해 이러한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면, 이 둘을 연결시켜 사유해 볼 이유도 충분하다. 이 같은 두 논의의 접점에서 출발한 연관 고찰을 통해 실천적 함의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헤들리 불과 존 롤즈의 연구 활동 및 연구 업적 전반을 개괄하면서

두 학자의 이론 전개에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두 학자의 문제의식, 철학적 • 사상적 기반, 시대적 배경, 사상의 변화 과정, 주요 저작들의 저술 의도 및 주장 등이 포함된다.

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도 및 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역설에 대한 헤들리 불의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불은 국제법, 전쟁, 세력균형과 같은 국제사회 제반 제도들의 현실적 작동 원리를 서술하면서 이들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에 주목한다. 한편 그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현존 '무정부적' 국제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전인류 공동체의 세계시민주의적 발전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불 스스로가 내 놓고 있는 대안인 국제사회 정의 원칙의 합의로 그의 논의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러한 정의 원칙의 합의 기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능한 모델로서 롤즈의 만민법 구상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왜 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롤즈의 기획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접점에 대하여, 그리고 불의 두 양면성의 영역 (국제사회 공존과 협력)과 관련하여 롤즈가 어떠한 원칙을 도출해 내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한다. 이러한 논의가 그의 만민법 구상 체계 내의 이상적 이론 (ideal theory) 및 비이상적 이론 (non-ideal theory)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해 평가해 본다.

5장에서는 불과 롤즈 논의의 비교 평가 및 종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평가 및 전망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역사 속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불과 롤즈의 논의를 연관적으로 분석해 본다.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주권과 인권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 질서와 정의의 가치 중 택일을 요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불에 의해 제시된 정의관의 합의가, 롤즈에 의해 어떠한 합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롤즈의 기획이 인도적 개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 자체로 완결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그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도적 개입 문제의 현안 및 실제 관행의 발전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정의로운 국제 질서 수립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전망한다.

2장 예비적 고찰

1. 불: 다원주의에서 연대주의로

헤들리 불은 자신의 스승인 존 앤더슨 (John Anderson)으로부터 이어 받은 철학적 실재론 (philosophical realism)을 기반으로 주로 지성사 탐구와 해석을 통한 "what is" 규명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관찰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 없이 세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기반, 자연법 (natural law) 사상을 거부하고 법 실증주의 (legal positivism)적 지향을 가졌다.¹³⁾ 이에 따라 그는 자연법 사상에 기반한 도덕적 보편주의 (moral universalism)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등 '도덕적 회의주의 (moral skepticism)'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¹⁴⁾ 일례로 정의로운 전쟁론 (Just War theory)과 같은 국제 윤리 문제에 대해 필연적으로 언급하게 될 때에도, 그는 여기에서 나아가 제반 국제적 행위를 아우르는 도덕 원칙에 대해 논하기를 꺼리고, 단지 국제법 등 국제사회 제도와 그 실행 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규범적 현상에 논의의 대상을 의식적으로 한정시키는 예민함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1961년에 발표된 <*The Control of the Arms Race : Disarmament and*

13) Meredith Thatcher and Coral Bell (eds.), *Remembering Hedley* (ANU E Press, 2008), pp. 11-19.

14) John Williams. "Hedley Bull and Just War : Missed Opportunities and Lessons to Be Learne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6 (2) (2010), pp.8-9.

Arms Control in the Missile Age 및 1966년의 논문 "The Grotian Concep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Theory: The Case for a Classical Approach" 등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윤리적 우유부단함 (ethical indecisiveness)"¹⁵⁾으로 인하여, 그는 정의 개념이 주관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달리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언급하며 그 종류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 개념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는 그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질서 개념을 자기 해석을 거쳐 규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면모이다. 이처럼 그는 각 국가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정의관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다원주의자 (pluralist)라 칭하고, 같은 학파 내에서 전인류 공통의 도덕 원칙을 발견해 내고자 하는 이들을 연대주의자 (solidarists)라 일컬으며 자신과 구별 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연대주의의 움직임이 정의에 우선하는 가치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존하는 국가체제 (states system) 내에서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도덕 및 규범성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그의 주된 연구 주제가 바로 국제사회의 규범 및 국가들의 규범적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제사회라 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가 일종의 사회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또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론적 천착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규범적 기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

15) Williams, 2010, pp.3.

어지게 되는 것이다.¹⁶⁾ 그는 국제 영역에서의 제도 및 권력, 정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상존해 온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 간 충돌 문제에 민감성을 보였다. 그는 정치적 실천의 문제와 도덕적 합의의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범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례로 그는 세계정치에서의 질서가 정의에 대한 요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정의로운 변화의 요구가 어느 정도로 충족되어야 세계정치에서 질서가 달성될 수 있는지 등 자신이 연구의 방점을 두고 있는 질서와 연관하여 정의 문제를 논하면서, 이 문제가 (전문 영역에서) 따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¹⁷⁾

그가 스스로 부여한 다원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어지고, 후기 저작으로 갈수록 연대주의자적인 면모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연대주의적 전환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지적된다. 첫째,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관리 체제 (superpower management)가 1970년대 실패하는 것을 목도하며 국제사회 제도가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점차 두드러지는 후기 식민사회의 이질성 (heterogeneity) 이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가 비관적 전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이었다. "얇은" 공통의 이해 및 가치 (thin sense of common interests and values)와 이데올로기적 합의 (ideological consensus) 의 부재 기반 위에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불

16) 마상윤, 2008, pp.46-47.

17)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35.

은 우려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⁸⁾ 이러한 고민의 기점에서 탄생한 저작이 바로 1977년의 *The Anarchical Society*로, 여기에서 이러한 다원주의-연대주의 사이의 긴장관계를 발견해 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그는 본격적으로 세계적 공동선 (world common good) 발견 및 연대주의적 세계 공동체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1983년의 논문인 "The International Anarchy in the 1980s"와 1984년의 저작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을 비롯하여 1984년의 논문 "Jus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등을 통해 그의 이러한 사상적 변화를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는 세계정치에서의 도덕적 정당성 (moral legitimacy) 제고를 촉구하며 세계시민적 연대주의 (cosmopolitan solidarism)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¹⁹⁾ 정의의 확보가 지속적 질서 유지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⁰⁾ 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세계정부가 부재하는 현존 국제체제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기본적 전망은 변하지 않은 한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불이 사상의 변화를 거치며 도출해 낸 결론은, 바로 국제사회 내 존재하는 다원적인 정의관들 간 합의 없이는 지속적인 질서 유지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후기 저작

18) N.J.Wheeler and T.Dunne, "Hedley Bull's Pluralism of the Intellect and Solidarism of the Will," *International Affairs* 72(1) (1996), pp.96-98.

19) Hedley Bull, "Jus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agey Lectures* (University of Waterloo, 1984(a)), pp.14.

20) Hedley Bull, "The International Anarchy in the 1980s," *Austrian Outlook* 37:3 (December 1983), pp.128-9.

으로 갈수록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그의 전기 저작에서 사실 (what is)의 문제에 집중하던 것과 달리, 후기 저작으로 향할수록 당위 (what ought to be)의 문제로 관심을 넓혀가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전반기에는 다원주의자로서 국가들의 질서를 정의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질서와 정의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서 궁극적으로 전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들의 도덕적 위상에 최우선적 관심을 기울였다. 문제는 그가 국제체제의 유지에 대한 옹호 및 전망을 지속하는 가운데 연대주의자적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진전된 그의 세계시민주의적 지향은 약소국에 대한 자원 배분, 그들에게 정당한 변화 (just change)의 활로를 열어줄 것 등을 포함한다. 이는 세계정부와 같은 중앙 권위체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과정의 실행을 위한 절차적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연대주의적 발상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불이 다원주의자로서 남았다면 이러한 합의의 도출은 애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정부 사회' 내에서 단순한 질서가 아닌 '정의로운 질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합의 도출의 필요를 스스로 답으로 내놓음으로써 불은 자신이 일전에 그토록 비난했던 연대주의자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모순을 타개할 수 있었다. 한편 그는 그 구체적인 정의 원칙 도출 방안을 제시하는 처방적 저작을 남기지는 않았는데, 이는 한편으론 그의 연구 영역과 스타일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론 이러한 연구가 다른 학문 영역의 몫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

정의관의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바로 정치철학의 역할이

다. 국제정치학 • 정치철학이라는 각각의 학문 영역에 자리한 두 학자는 보다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쪽에서 정의관의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합의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계의 일차적 의의가 있다. 다만 불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사회 정의 원칙 논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도덕 원칙이 아닌, 정치적 • 구성적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권체제의 붕괴 및 세계정부의 수립을 지향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 논의가 아닌, 현존하는 국제체제의 현실 위에서 출발하는 정치철학이어야만 불의 논의와 맥이 닿을 수 있다.

2. 롤즈: 정치철학의 역할

철학은 어떻게 인간과 사회 세계의 화해라는 막중한 임무를 달성해낼 수 있을까? 이는 정치철학자로서의 롤즈가 던진 커다란 화두이자 그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실천의 가능성의 한계 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정치철학은 추론 (reason)과 성찰 (reflection)의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상향을 지향 (orient)하게 하고, 실행 가능한 정치적 가능성의 한계 역시 면밀히 살피도록 함으로써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realistic utopia)'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²¹⁾ 즉, 롤즈는 '만민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이

21)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dited by Erin Kel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상항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 정치철학의 소명이라고 보았다.²²⁾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그가 중·고교를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는 학부 초기에 세부전공을 무엇으로 정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는 화학, 수학, 음악, 예술사 등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시도해 보다가, 스승인 노먼 말콤 (Norman Malcom)의 영향을 받아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심지어 1943년 1월 학부 졸업에 즈음하여, 향후 신부 수업을 받기 위해 버지니아 신학 대학에 진학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 해 2월 그는 사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받고난 뒤 태평양 전쟁에 2년 간 파병되었다. 그는 필리핀, 일본 등지에서 복무하였으며, 그가 속한 부대는 원자폭탄으로 황폐화 된 히로시마를 거쳐 행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그는 정복과에 소속되어 적의 위치를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쟁이 종료된 뒤 그는 장교가 될 기회를 얻었으나 그는 군대라는 음울한 기관에 더 이상 잔류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 같은 참전 경험은 종교 및 신의 의지의 신성성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종래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그로 인하여 그는 사제가 되고자 했던 열망을 버리게 되었다. 이처럼 신학 공부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고 나서 롤즈는 프린스턴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였다.²³⁾

2001), pp.2-5.

22)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11.

23) Thomas Pogge, *John Rawls : His Life and Theory of*

이후 그는 코넬 대학, MIT, 하버드 등지에서 철학을 강의하면서 자신의 저작인 *A Theory of Justice* (1971)를 완성해 갔다. 그의 강좌는 이 책의 초안에 기반하기도 하였고, 칸트와 헤겔 등 정치 철학사의 주요 저작에 관하여 그가 작성한 광범위한 교안을 토대로 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1960년대 말에 치러진 베트남 전쟁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동료인 로드릭 퍼스(Roderick Firth)와 함께 참석한 1967년 5월 워싱턴 반전 회의에서 롤즈는 ‘전쟁의 문제’라는 강좌를 가르쳤으며, 그 강좌에서 그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그 수행 방식이 과연 정당화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가 볼 때에 국방부의 당시 징병 방식은 분명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26세 이전의 남성에게는 의무적이었던 군복무를 수행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한편 국방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교수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 과목에서 낙제하는 것이 그 학생을 징집 대상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롤즈는 이같은 학생들을 위한 징병 면제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였다. 왜 학생들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가? 특히, 부유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교육 기관에 진학 시키는 데 중요한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만일 젊은이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애초에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는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에게 평등하게 강제되어야만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는 불균등한 부의 분배 상황을 사회의 주된 결함으로 인식하였고, 이것이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으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4-14.

로 매우 쉽게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비슷한 재능을 타고 나고 비슷한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 및 사회 계급과는 관계 없이 정치적 직위를 획득하는 데에 있어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²⁴⁾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정의론>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확장해 나갔다. 그의 1993년 저작 *Political Liberalism*은 이러한 추가와 개선의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저작은 정의관의 역할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정의관의 역할 및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 삶에 대한 그의 연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롤즈는 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이 둘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의 관점은 국제 관계에서의 정의관으로 확장되어 1999년 *The Law of Peoples*로 출간되었고, 그의 수정된 정의관은 2001년 재출간된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졌다.²⁵⁾

그는 연구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삶을 어느 정도로 바로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들의 삶을 보다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인간 존재의 집단적인 삶이 가치로울 수 있는 사회 세계를 전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는 이러한 질문이 현실 세계와 인간 본성이라는 경험적 조건의 맥락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사회 세계를 모색하는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현실적인

24) Pogge, 2007, pp.15-21.

25) Pogge, 2007, pp.25-26.

유토피아를 구상하고자 하였다. 그는 유토피아적 이상이 실제로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달성 가능성의 토대가 잘 갖추어진 신념은 우리를 세계와 화해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가 정의로운 집단적 삶이 인간 존재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 혹은 후손들이 어딘가에서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다. 현실적 유토피아를 그려냄으로써, 즉 우리의 집단적 삶의 최종적인 도덕적 목표를 구상함으로써 정치철학은 현실의 냉소주의를 씻어내 버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롤즈는 확신하였다.²⁶⁾

만민법을 구상하는 롤즈의 방법론은 롤즈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고도의 추상화 작업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가 결코 현실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철학의 추상화 작업은 현실의 문제에 뿌리를 둔 실천적 해결 기제로서 제시되고 있다. 롤즈는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작업이 추상 자체를 위한 추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정치적 가치의 깊은 갈등에 의해 공유된 정치적 이해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정치철학에 호소하게 되며,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록 이 갈등의 뿌리에 관한 분명하고 정리된 견해를 얻기 위하여 추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이처럼 롤즈의 만민법은 단지 비역사적이고 추상적인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 접근법을 통해 현실 사회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다 근원적인 실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염

26) Pogge, 2007, pp.26-27.

27)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43-46.

두에 들 필요가 있다.

3장 국제사회의 질서, 제도, 규범

1. 국제사회의 질서와 제도

불의 국제사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states), 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 (system of states), 그리고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 (society of states) 또는 국제사회 (international societ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국제관계의 출발점은 국가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대내주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그 영토와 인구 내의 어떠한 권력보다 우월한 최고권력을 말한다. 또 국가는 대외주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외부권력에 대한 패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국가는 현실적으로도 통치권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 (또는 국가체제)는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충분한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어느 정도 서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형성된다. 이처럼 국가들이 서로 정기적으로 접촉할 경우, 그리고 각각의 행동이 상대의 행동에 대한 계산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하나의 체제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 (또는 국제사회)는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가치를 인식하는 국가들이 상호관계에서 일정한 공통의 규칙에 의해 구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통의 제도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사회를 형성할 때 성립한다. 오늘날의 국가

들이 국제사회를 형성한다면, 이것은 공통된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공통된 가치를 인식하면서 상호관계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 구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불은 주장한다. 그래서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독립성과 그들과 맺은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동시에 그들은 국제법적 절차, 외교제도와 일반적인 국제기구의 구성, 그리고 전쟁관습과 규약 등과 같은 제도의 작동에 협조한다.²⁸⁾ 불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체제, 알렉산더 제국의 해체와 로마의 정복 사이에 존재했던 헬레니즘 왕국들의 국제체제, 중국 전국시대의 국제체제, 고대 인도의 국가체제, 그리고 유럽에서 등장하여 현재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대 국가체제 등이 국제사회로서의 요건을 갖춘 국제체제들이다.²⁹⁾

이 같은 세 단위에 대한 규정을 우선 해 놓고, 다음으로 그는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국제관계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마틴 와이트³⁰⁾의 논의를 빌려 온다. 근대 국가체제의 역사 속 세 가지의 사상적 전통 중 첫째는 국제정치를 전쟁상태로 보는 홉스적 또는 현실주의적 전통, 둘째는 국제정치에 인류공동체가 잠재해 있다고 보는 칸트적 또는 보편적 전통, 셋째는 국제정치를 국제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그로티우스적 혹은 국제주의적 전통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홉스적 전통은, 국제관계를 국가들이

28) Bull, 1977, pp.8-19.

29) Bull, 1977, pp.15.

30) Martin Wight, "Western Val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Herbert Butterfield and Martin Wight (eds.), *Diplomatic Investigations* (London: Allens & Unwin, 1967)

만 대 만의 전쟁을 치르는 투쟁의 장으로 설명한다. 이는 국가 사이의 완전한 갈등 상황을 그리는 것이며, 제로섬 (zero-sum) 게임에 비유된다. 국제적 행위에 대한 홉스적 처방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목표를 어떠한 도덕적·법적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추구할 수 있다. 도덕 및 법 관념은 사회 맥락 안에서만 유효한 것인데, 국제정치의 장은 사회 범위 밖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정 반대편에 있는 칸트적 또는 보편주의적 전통은, 각 국가의 구성원인 개별적 인간들 (individuals)을 연결시켜 주는 초국적·사회적 연대에서 찾는다. 이에 따르면, 국제관계는 일견 국가들 간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류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인류공동체에서 모든 개인들의 이해관계는 일치되며, 따라서 국제정치는 전적으로 비제로섬 (non-zero-sum) 게임이다. 도덕에 관해서 칸트적 견해는 홉스적 관점과는 달리 국제관계 분야에서 국가의 활동을 제한하는 도덕적 명령 (moral imperative)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류공동체 차원에서 더 높은 도덕적 명령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들의 공존을 지탱하는 규칙들은 무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로티우스적 또는 국제주의적 전통은 현실주의 전통과 보편주의 전통 사이에 위치한다. 그로티우스적 전통은 국제정치를 국가체제나 국제사회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 관점은 국가들이 공통의 규칙과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스스로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로티우스적 견해는 칸트적 관점과 달리,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제정치의 주요 실체라는 홉스적

전제를 수용한다. 즉, 국제사회의 구성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이 견해에 의거하면,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일치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국가들은 상호간에 형성한 규칙과 제도에 의해 구속 받는다. 이는 하나의 사회로서 여기에 속한 국가들은 도덕과 법의 구속을 받는다. 이는 인류공동체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국가들 간 공존과 협력의 요건들이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견해와는 다르다.

불은 이러한 그로티우스적 국제사회관이 국가체제에 대한 사상으로서 언제나 존재해 왔음을 지적한다. 국가들 사이에 세력을 위한 전쟁과 투쟁이 있고, 초국적 연대와 갈등이 있으며, 국가들 사이에 협력과 규제된 교류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회'라는 개념은 때때로 불안정한 현실에 기초했는지언정 어느 단계에서도 사라진 적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국가체제 전체를 집어삼킨 세계대전들이 그러한 개념의 신뢰성에 먹칠을 했고, 이로 인해 사상가와 정치가들은 홉스적 해석과 해결책으로 되돌아갔지만, 곧 평화의 시기가 왔다는 점을 하나의 예로 든다.³¹⁾

이처럼 국제사회적 요소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불은 '질서 (order)'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 행위의 형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질서와 다른 목표들과의 관계에 있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³²⁾ 특히 질서와 정의 간의 충돌에 초점에 맞춘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질서를 우선해야 하는 까닭은, 불에 따르면, 정의는 질서라는 배경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기

31) Bull, 1977, pp.40.

32) Bull, 1977, pp.26-27.

때문이다.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혹은 근원적인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이 존재할 때만, 한층 더 높은 또는 2차적 목표들이 확보될 수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³³⁾ 어느 정도 질서의 배경이 있고 나서야 다양한 종류의 권리들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질서는 국가 간 정의와 평등의 조건이다. 국제질서라는 배경이 없으면 국가의 평등한 독립권이나 민족의 평등한 자결권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불은 단호히 말한다. 마찬가지로 세계질서는 인간적 정의 또는 세계시민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약속의 존중, 재산 규칙의 안전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개인을 위한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정의의 목표는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세계적 공동선에 따라 부담과 보상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목표도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는 논리이다.³⁴⁾ 이러한 견지에서 그는 세계정치에서의 질서가 정의에 대한 요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정의로운 변화의 요구가 어느 정도로 충족되어야 세계정치에서 질서가 달성될 수 있는지 등 질서 문제와 본질적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의 문제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그의 주된 관심은 사실로서의 질서와 가치로서의 질서 간의 관계, 그리고 이론과 실천 사이에 구축된, 또는 구축 가능한 가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제질서를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또는 근원적인 목표를 지탱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목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은 최우선의 목표로 우선 '국가

33) Bull, 1977, pp.35.

34) Bull, 1977, pp.93.

체제와 국가들의 사회 그 자체의 보존'을 들었고, 다음으로 '개별국가의 독립성과 대외주권의 유지', 다음으로 '평화'를 들었다. 그 외에, 죽음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폭력의 제한, 약속의 이행, 소유규칙에 의한 소유의 안정화 등이 포함되었다.³⁵⁾ 그는 이러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하여 작동해 온 제도로서 세력균형, 국제법, 외교제도, 전쟁, 강대국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국제 제도들이 국가들의 체제유지와 평화의 보존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작동해 왔으며 향후 이들이 유지 및 강화되는 한, 현존 국가체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간의 갈등은 공통이익에 대한 인식과 공통의 규칙 및 공통의 제도에 의해 완화되어 왔다. 만일 오늘날 주권국가들이 이러한 인식과 규칙 및 제도를 유지하고 확장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체제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며, 평화와 정의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 그 어떤 보편적 정치조직도 존속할 수 없을 것임을 그는 지적한다. 더불어 이러한 합의의 창출이라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체제를 넘어선 어떠한 정치조직의 형태 하에서도 문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체제의 극복 그 자체는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보편적 정치조직의 형태가 국가체제인 이상, 합의의 모색도 바로 이 체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35) Bull, 1977, pp.19-21.

36) Bull, 1977, pp.284-285.

2. 질서 유지를 위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

불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떠받치는 제도들이 작동해 온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사회가 정의 및 공동선 관념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왜 그의 논의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촉구로 이어지는 것인가? 이는 국제사회의 제도들이 본질적으로 구성적이고도 권력정치적인 양면성을 띠기 때문이다. 불은 논증을 통하여 무정부적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규범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이상, 제도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질서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보였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설적 충돌 및 무질서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정의와 질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에 따르면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제도와 메커니즘들은 적절하게 작동할 때에 필연적으로 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불은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 즉 세계정치에서 도덕적 권리와 의무가 어떤 대리인 또는 행위주체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의의 범주를 셋으로 나누어 상술한다. 그 중 첫째는 국제적 또는 국가간 정의로서, 이는 국가나 민족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덕적 규칙이다. 둘째는 개인적 또는 인간적 정의로서, 이는 인간 개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도덕규칙이다. 셋째는 세계시민적 또는 세계적 정의로서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류로 이루어진, 그 구성원이 인간 개개인인 보편적 사회의 공통목표나 공통가치에 관한 세계적 공동선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의이다.³⁷⁾ 그에 따르면 국가가 주된 행위주체인 현재의 세계정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국제적 정의 관념이다. 더불어 이 정의 관념만이 무정부 국제사회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인간적 정의관념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시민적 또는 세계적 정의 관념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분히 현실적이다. 인류의 이익이 표명 및 집약되고, 정치사회화와 정치적 충원과정의 보편적 정치체계를 구성하려면,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메커니즘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무기통제, 인구와 자원의 배분, 환경보존 등의 문제들에 대해 무엇이 세계 전체의 이익인지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주권국가, 또는 주권국가가 지배하는 국제기구의 견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제사회가 세계적 공동선의 관념을 수용하였다면, 예컨대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민정책은 일반이익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국가에 자본이 가장 필요한지 물어야 할 것이고, 세계 내전과 무력충돌의 해결책을 인류 일반이익에 따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적 공동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고 또 점차 늘어 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나, 이러한 사적 개인의 의견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정치적 과정—이익의 주장과 조화—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붙은 강조한다.³⁸⁾ 그러한 의견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공동선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위는 오직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만 부여되

37) Bull, 1977, pp.78-82.

38) Bull, 1977, pp.81-82.

는 까닭이다. 그는 국제사회가 세계시민적 정의에 대해서는 극도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인간적 정의에 대해서는 선택적이고 모호한 환영의 태도를 보이지만, 국가간 정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국제적 공존의 구조는 국가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규범 또는 규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정의 관념은 국제사회의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인간적 정의 관념도 국제사회의 기초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나, 국가간 정의 관념은 국가간 공존의 맹약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기이익의 명령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의 명령 외에 도덕적 명령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널리 합의된 국제적 정의원칙을 체계적으로 모욕하는 수단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불은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제사회의 제도인 국제법, 전쟁, 세력 균형 간 충돌이 빚어내는 역설을 지적한다. 국제법은 현상 (status quo)을 정당화 하고, 동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는 입법과정을 결여하고 있다. 법은 일련의 기정사실 (faits accomplis)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도 유효하다는 원칙에 의해, 무력에 의한 것이든 혹은 무력의 위협에 의한 것이든 모든 기정사실은 정당화된다. 이처럼 현대의 국제법은 국가들의 무력사용에 가하는 제한이 제한적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질서에 대해 국제법이 기여하는 바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불은 지적한다.³⁹⁾ 또한 국제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세력균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⁴⁰⁾ 그런데 세력균형의 논

39) Bull, 1977, pp.150.

40) Bull, 1977, pp.87-89.

리에 따르면 아무런 법적 · 도덕적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인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용인된다. 또는 약소국을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것이 세력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약소국은 희생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전쟁의 경우, 국제법의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위법이다. 상대국이 자국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 그러나 세력균형이 요청하는 바는, 한 국가가 설령 아무런 법적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그 나라의 상대적 국력이 세력균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는 경우에는 개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⁴¹⁾ 한편 세력균형의 현대판인 '공포의 균형'을 위해 파괴의 위험이 확대 및 이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정의 관념에는 위배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질서유지에 중요한 몫을 한다. 이처럼 국제체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종종 국제법의 금지명령의 위반을 동반한다. 그러면서 불은 이것이 바로 세력균형의 원칙에 들어 있는 일종의 역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²⁾ 이는 무정부 국제 사회의 필연적 귀결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거로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 합의가 요망된다. 그에 따르면, '공존의 규칙'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에는 이 규칙들을 제외하면, 보통 대부분의 일에 대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력사용을 규율한 규칙은 전쟁을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느 쪽이 정당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⁴³⁾ 국제 협정을 규율한 규

41) Bull, 1977, pp.138.

42) Bull, 1977, pp.104.

칙은 약속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느 특정한 협정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없다. 타국의 강제적 내정간섭을 배격하는 각국의 주권에 관한 규칙은 주권의 상호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무엇이 정당한 간섭이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통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⁴⁴⁾ 이와 더불어 그는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법 준수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강대국 권력 정치에 의해 돌아가는 무정부적 국제정치의 현실에 따라, 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국가는 법 규범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고, 타국에 법을 강요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국제법 규범의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주권 • 불간섭 • 외교적 특전 등에 관한 규범들의 실효성은 '상호주의 (reciprocity)' 원칙에 입각하고 있고,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국가는 타국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 규범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나라가 성실하게 법을 지킬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 이외에 어떤 보장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⁴⁵⁾ 이는 비록 국제사회 내 질서 유지의 기제로 전쟁이 활용되고 국가들에 의해 국제법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해 왔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의거해 전쟁을 막고 정당한 전쟁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는 쪽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비록 국제법이 현실적인 힘의 논리 앞에서 국제 질서를

43) Bull, 1977, pp.150.

44) Bull, 1977, pp.150-151.

45) Bull, 1977, pp.104.

지키는 데에 별 효력이 없고 세력균형의 작동 앞에 무력하다고 하지만, 이대로 국제법을 무력히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해답은 아님을 불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불에 따르면, 세계정치에서 질서유지의 요구와 정당한 변화의 요구는 상호배타적이 아니다. 분명히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계정치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어떠한 체제도 최소한 어느 정도 변화의 요구를 수용해야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질서목표의 현명한 추구는 정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변화의 요구도 질서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난 후에는 질서 있는 어떤 체제 속으로 통합되어야 그 변화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계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즉 변화의 정당성에 합의하여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관계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어도,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일반적 합의로써 변화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⁴⁶⁾ 이처럼 국제사회 제도들 간 충돌 및 더 큰 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해 질서와 정의가 희생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은 바로 국가들의 행위의 정당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합의의 도출에 따라 질서와 정의의 가치는 '서열적'인 것이 아닌 '보완적'인 것이 되어, 정의로운 질서 모색의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질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질서는 정의가 수호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는 국제적 쟁점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여부가 세계적 차원의 연대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척도가 될 수

46) Bull, 1977, pp. 91.

있다고 보았다.⁴⁷⁾ 그가 후기 저작에서 비서구 국가들이 서방 세계에 갖는 반감과 저항이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비서구 국가들은 인종적, 경제적, 문화적 평등을 요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점차 권력의 재분배까지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관계의 제영역들, 특히 질서 유지의 문제가 정의의 가치보다 대체로 중시되어 온 군사적 영역에서 새로운 난점을 야기한다.⁴⁸⁾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하면서 불은 주권과 인권 개념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국제 관계에서 모든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권리는 궁극적으로 국제 공동체 (international community)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고 이에 종속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⁴⁹⁾ 더불어 국가들은 세계적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한 지역적 행위자 (local agents of a world common good)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세계적 공동선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들의 이익이 아닌 인류 개인들의 이익이라고 불은 역설하였다.⁵⁰⁾

47) Hedley Bull, "The West and South Africa," *Daedalus* 111(2) (1982), pp.266.

48) Bull, 1984(a), pp.10-11.

49) Bull, 1984(a), pp.14-15.

50) Bull, 1984(a), pp.16-17.

4장 국제정의원칙의 합의 구상

롤즈의 논의는 여러모로 다원주의-연대주의 논의의 경계에서 양측을 포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그는 도덕성을 가진 사회들인 국민들 (peoples)을 행위자로 상정하고 그들 간의 계약을 기본 틀로 삼지만, 그가 논의에서 최고의 도덕적 가치의 단위 (ultimate units of moral worth) 로 여기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 (individuals)이다. 왜냐하면 그가 만민법 구상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질서정연 (well-ordered)하고 자율적인 만민이 함께 힘을 합쳐 보편적 인권 (universal human rights)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국제 정의 원칙의 수립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체제를 옹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인류 개개인의 안녕 (well-being)을 지향하는 불의 구상과 유사성을 띤다.

1. 이상적 이론

롤즈에 따르면 세력균형에 의한 평형상태와 국제법의 작동은 '잠정적 타협 (modus vivendi)'에 불과하다. 그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와 공포의 균형에 의거한 아슬아슬한 안정상태가 아닌 '영구적 평화'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적 처방을 내린다. 그것이 바로 만민들이 당사자가 된 원초적 입장과 만민법의 합의이다.

그가 세력 균형에 의존해 온 국제법을 대체하기 위한 구상인 칸트의 <영구평화론 (1795)>에서 평화적 연합의 영감을 얻었

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영구평화론은 국가법, 만민법, 세계시민법으로 구성된 평화 사상이다. 우선 국가법과 관련하여, 칸트는 군주가 자의적 통치를 자행하기 쉬운 군주제를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국가 행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공화제가 바람직함을 역설한다. 이 같은 공화제 질서 수립을 통해 정책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민법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역설한다. 국가 간 자유 교역이 증대될 수록 전쟁을 통한 국익 극대화의 효용은 적어지고 따라서 전쟁 가능성도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들이 상호간 합의, 협정, 조약 등을 체결하여 초국가적 세계연방을 형성함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여기에서 골자는 국제법, 국제회의 등을 중심으로 국가들끼리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질서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는 세력균형을 의도적으로라도 이루어 국제법의 작동과 국제 질서 유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처방과는 다른 차원의 실천을 가능케 한다.

구체적으로 만민법 구상을 통해 그가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현실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기존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주권-인권 간의 긴장 관계이다. 그에 따르면 만민법 구상의 중요한 동기는 바로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자행된 크나큰 죄악들이다. 이는 국제법적 질서 하에서 인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상황들을 의미한다. 부당한 전쟁과 압제, 종교적 박해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거부, 기아와 빈곤, 인종 말살과 대량 학살은 모두 정치적 부정의에서 유래하며 그 잔인성과 만행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정당한 사회정책의 준수와 정당한 기본 제도들의 확립을 통해 일단

심대한 형태의 부정의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러한 크나큰 죄악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다.⁵¹⁾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와 연결코자 하였다. 자유적 정의관 내에서 만민법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의 외교정책의 이상과 원칙들을 고안해 내고자 한 것이다.

그는 국가 (state) 대신에 만민 (people)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면서, 전통적 국가 주권 개념과 차별화되는 만민의 특별한 도덕성에 대해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30년 전쟁 (1618-1648) 이후 3세기 동안 실정법으로서 국제법에 포함되어 온 기존의 전통적 주권 개념은, 국가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이익에 따라 설정된 국가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한편, 자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롤즈는 이러한 전통적 주권의 요소는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용해야 할 만민법의 합당한 요구에 따라 제한될 필요가 있다.⁵²⁾ 이는 만민 간 공존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롤즈에 따르면, 만민의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주권을 제한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1618년 발발한 종교전쟁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체결로 귀결된 이래, 국제법은 거의 무제약적으로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주권에 제약을 가하려는 경향을 돌이켜 보면, 무제약적인 주권을 보유하는 국가 (state) 보다는, 합당성 (the reasonable)을 지니는 만민을 행위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⁵³⁾ 이처럼 롤즈는 만민이 갖는 도덕성의 핵심으로서 합

51) Rawls, 1999, pp.7.

52) Rawls, 1999, pp.25.

당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지 국익을 좇는 전통적인 합리성 (the rational) 을 넘어, 타 구성원들의 견해에도 귀 기울이는 한편, 공적 이성 (public reason)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만민을 규정하는 데 기여한다. 즉, 롤즈가 구상하는 만민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한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타자의 합당한 수준의 이익까지 고려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들이라 할 수 있다.⁵⁴⁾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기반으로 만민법의 이상과 원리를 준수하는 자들이 바로 만민이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만민의 사회이다. 그에 따르면 만민의 도덕적 본성은 적절한 자부심과 명예감 역시도 포함한다. 온당한 애국주의 (proper patriotism)가 허용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역사와 성취적 업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만민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존중은 만민의 평등과 부합하는 적절한 존중이다. 만민을 움직이는 이익들은, 공정한 평등 원칙은 물론 모든 만민들에 대한 적절한 존중의 원칙을 통해 찾을 수 있고 이와 부합하는 합당한 이익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합당한 이익들이 민주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 합당한 이익들이 없다면 국가 간 평화는 기껏해야 잠정적 타협, 즉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일시적인 안정성에 불과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⁵⁵⁾

53) Rawls, 1999, pp.25-27.

54) 김만권,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개마고원, 2004), pp.274-5.

55) Rawls, 1999, pp.44-45.

그러면서 그는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설명함에 있어 '올바른 이유에 입각한 안정성'과 '세력균형에 의한 안정성'을 명확히 구별하고자 한다. 잠정적 타협만을 가능케 하는 세력균형에 의한 안정성과 달리, 그가 내세우는 올바른 이유에 입각한 안정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민들이 정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정의감을 습득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는 만민간의 정의로운 사회가 올바른 이유에 입각하여 안정적이라 추정한다. 즉 올바른 이유에 입각한 안정성은 단순한 잠정적 타협이 아니라 만민법 자체에 대한 준수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추론이 실제 역사상에 일어난 사실로서 입증되어야 하며, 자유적 만민의 사회는 올바른 이유에 입각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정의의 관점에서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만민 간의 제도와 관행은 관련된 옳음과 정의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⁵⁶⁾

그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이기 위해 자유적 사회의 특징들을 언급한 레이몬드 아롱 (Raymond Aron)⁵⁷⁾의 용어를 빌려와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적 만민은 '만족한 만민 (satisfied peoples)'이다. 이들의 기본적 필요는 충족되고, 이들의 근본적 이익은 다른 민주적 만민들의 이익들과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 모든 사회들이 올바른 이유에 입각해 현상유지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진정한 평화가 유지된다. 아롱은 이러한 평화 상태를 힘에 의한 평화 (peace by power)나 무능에 의

56) Rawls, 1999, pp.45.

57) Raymond Aron, *Peace and War*, trans. R. Howard and A.B.Fox (Garden City: Doubleday, 1966)

한 평화 (peace by impotence)의 개념과 대비해 "만족에 의한 평화 (peace by satisfaction)"라 부르며,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기술하였다. 그는 정치 단위체들은 영역의 확장은 물론 다른 영역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 단위들은, 자신의 물질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을 증대하거나, 자신들의 제도를 전파하려 하거나, 지배라는 도취된 자만감에 빠져 그것을 즐기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팽창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조건들이 지속적인 평화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아롱에 동의하면서, 자유적 입헌 민주정체 하에 사는 만민들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만민은 정당성 있는 정부의 공유된 원칙을 존중하며, 권력과 명예 추구의 열정이나 사람을 취하게 하는 지배의 자만감 같은 것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열정들은 귀족계급과 이보다 못한 귀족 사회를 자극하여 유리한 환경에서 이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추구하게 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귀족계급, 그보다 배타적 특권계급 (caste)이라 칭할 수 있는 계급은 입헌정체에서는 그러한 권력이 없다. 이러한 입헌정체들은 다른 사회를 종교적으로 개종하려 들지도 않는다. 자유적 만민은 지배와 영예의 추구, 정복의 흥분과 타자들에 대한 권력 행사의 쾌감을 위해 다른 국민들을 적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면, 자유주의적 만민은 도대체 전쟁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자존감은 공적 문화와 시민 문화의 성취에 근거하는 바 자신들의 시민사회에 내재하는 것이어서 다른 만민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본질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적 국민들은 상호 간에 존중하고 만민간의 평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논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면모이다.

롤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만민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자유주의 사회 또는 국민 (liberal societies or peoples)으로, 이들은 자유주의 정치질서 속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자유주의를 체화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며, 정의감 (sense of justice)과 선 관념 (conception of the good)과 같은 덕성을 갖춘 자들을 의미한다. 둘째, 비자유주의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 또는 국민 (non-liberal but decent societies or peoples)으로, 자유주의를 체화하지는 못하였으나 기본적인 질서와 법, 인권을 존중하는 이들을 가리킨다.⁵⁸⁾ 이 같은 두 종류의 국민들이 바로 만민의 사회 (Society of Peoples) 내에서 협동이 가능한 '질서정연한 (well-ordered)'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정치적 결정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들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적정성 (decency)을 결여함으로써 만민 사회 내에서의 협동이 불가능한 '질서 정연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사회들도 존재한다. 이는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사회들이다. 첫째, 합당한 만민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정체인 무법국가 (outlaw states)로, 이러한 정체들은 자기 체제의 합리적인 (합당하지 않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쟁을 자행하거나, 그 국가 내 국민들의 인권과 같이 만민의 사회에서 권리로 인정된 것을 침해한다. 둘째, 불리한 여건의 사회 (societies burdened

58) Rawls, 1999, pp.4.

by unfavorable conditions)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들 때문에 자유적 정체나 적정 수준의 질서 정연한 정체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사회들이다. 그리고 인권은 존중되지만 정치적 결정에 있어 국민들이 의미 있게 역할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질서정연한 사회라 볼 수 없는 자애적 절대주의 체제 (benevolent absolutism) 를 가리킨다.⁵⁹⁾

만민법 도출을 위한 합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으로, 이러한 원초적 입장의 개념은 만민들의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력체제로 이해하였을 때 정의에 대한 전통적 이해 가운데 어떤 것이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원칙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⁶⁰⁾ 합의의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의 핵심인 "무지의 장막 (veil of ignorance)" 뒤에 선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 사회세계의 우발성 (contingencies)으로부터 추상화 되어야 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적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합의의 조건이 사회적, 역사적, 자연적 경향이 누적된 사회의 배경적 제도에 필연적으로 녹아 들어 있는 유리한 협상 고지의 가능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과거로부터 연유한 우발적 유리함과 우연성이,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질 기본 구조 자체의 제도를 규제하는 원칙에 대한 합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⁶¹⁾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자유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당사자는 자신들의 사회

59) Rawls, 1999, pp.90.

60) Rawls, 1999, pp.22.

61) Rawls, 1993, pp.23.

의 영토나 인구의 규모, 상대적 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 이들은 입헌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합당한 우호적 조건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자유주의 사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연자원의 부존 정도, 경제 발전 수준 및 여타 유사 정보들을 알지 못한다.⁶²⁾ 이러한 원초적 입장은 크게 세 단계로 사용된다. 먼저 개별 사회 내에서 국내사회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에 쓰인다. 그 다음으로 자유주의 사회들 (liberal peoples) 사이의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쓰인다.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간에 적용되는 원초적 입장은 다음의 특징들을 지닌다. 1) 국민의 대표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합당하고도 공정한 입장에 처해 있다. 2) 이들 대표들은 합리적이다. 3) 이들은 만민법의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 심의를 한다. 3) 이들은 만민법의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 심의를 한다. 4) 이러한 심의는 올바른 이유를 근거로 하여 진행된다. 5) 만민법에 해당되는 원칙들의 선정은 국민의 근본이익에 기초해야 한다.⁶³⁾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자유주의 국민, 그리고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국민 상호간에 사용된다. 특히 세 번째 단계에서 제시되는 비자유적이나 적정 사회들에 대한 관용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관습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당한 다원주의 위에서의 질서 모색의 면모를 보여준다. 바로 이 부분이 이상주의적 만민법의 확장으로, 이는 자유주의 국민과 비자유적이나 적정 수준의 국민들 간 상호 존중 가능성에 기반한다. 이러한 세 단계의 설정을 통하여, 국내적은 물론 국제사회적으로도

62) Rawls, 1999, pp.33.

63) Rawls, 1999, pp.30-31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해법으로의 만민법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원칙으로 도출된다.

1. 만민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 이들의 자유와 독립성은 다른 국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2.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3. 만민은 평등하며 자신들을 구속하는 약정에 대한 당사자가 된다.
4. 만민은 불간섭의 의무 (duty of non-intervention)를 준수해야 한다.
5. 만민은 자기방어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자기방어 이외의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7. 만민은 전쟁 수행에 있어 특별히 규정된 제약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8.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수준의 정치사회 및 사회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 하에 살고 있는 다른 국민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⁶⁴⁾

이러한 만민법 (law of peoples)은 국제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의도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로마의 만민법 (jus gentium)과는 구별된다. 또한 기존의 국제법 (international law)과도 구별되는 성격의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그의 언급을 참고해 보자.

64) Rawls, 1999, pp.37.

만민법 (law of peoples)이란 용어는 전통적인 만민법 (jus gentium)에서 유래하며 'jus gentium intra se'란 표현은 제국민들의 여러 법들 (the laws of peoples)에 공통적인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나는 만민법을 이러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옳음과 정의에 대한 특수한 정치관이라는 뜻으로 쓰려 한다. 그리고 만민의 사회 (Society of Peoples)는 상호 관계에서 만민법의 이상과 원칙들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⁶⁵⁾

즉, 그가 제시하는 만민법 8개 조항은 현실의 국제정치와 국제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법 위의 국제법'이라 볼 수 있다. 만민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었고, 만민으로 하여금 평화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상위 규범인 것이다.

2. 비이상적 이론

한편 롤즈의 만민법은 다른 접근방식으로도 그 확장이 이루어진다. 롤즈는 만민법의 비이상적 이론에서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해 논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된다. 이 중 하나는 불순응 이론 (noncompliance theory)으로,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를 무질서로부터 보호하기 위

65) Rawls, 1999, pp.3.

하여 무법국가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논의한다. 다른 하나는 불리한 여건들 (unfavorable conditions)의 문제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들로 인해 질서정연한 정체의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고통 받는 사회들에 대한 원조 의무에 대해 논한다. 롤즈는 만민법의 확장에 특히 강조점을 두는데, 이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인 자유적 국민들과 적정 수준의 국민들이 만민법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질서 정연하지 못한 사회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편입하기 위해 만민의 사회는 만민법 하에 새로운 제도와 실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롤즈의 만민법이 질서 정연하지 못한 사회들인 무법국가 그리고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롤즈는 그러한 새로운 실천들이 인권 증진을 마땅히 포함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롭고 수준 있는 모든 정치체제들의 외교정책에 있어 이것이 고정불변의 관심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⁶⁶⁾

우선 불순응 이론은 특정 정치체제가 합당한 만민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조건들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정권의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쟁에 호소하며, 이러한 체제들을 무법국가 (outlaw states)로 규정한다. 롤즈는 무법국가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는 질서 정연한 국민들이 무법적 정체들이 이들의 방식을 스스로 변화시키도록 장기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압력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 및 다른 지원을 확실하게 거부하거나, 또는 무법적 정체를 상호 이

66) Rawls, 1999, pp.47-48.

익을 가져오는 협력적 관행에 있어서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질서 정연하지 못한 국가의 공격적 · 팽창주의적 목표가 질서정연한 정치체제의 안보와 제도를 위협하고 이들에 대해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 대항해서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⁶⁷⁾ 롤즈는 인권을 위반하는 무법국가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롤즈는 무법국가는 공격적이며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그러한 국가가 스스로 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정의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민간의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⁶⁸⁾ 만민법 원칙 제5항은 질서 정연한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 국민들과 적정수준의 국민들은 무법국가의 공격적이며 팽창주의적인 정책에 의해 자신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합당하게 믿을 수 있을 때 전쟁에 호소할 수 있다.⁶⁹⁾ 롤즈에 따르면 그 어떤 국가에게도 그 국가의 합당한 이익에 대립하는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의 권리는 없으나, 만민법은 합당하게 정의로운 만민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사회에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전쟁의 권리는 동맹국의 방어를 도울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적 사회, 비자유적이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에는 이처럼

67) Rawls, 1999, pp.94-95.

68) Rawls, 1999, pp.81.

69) Rawls, 1999, pp.89-91.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한 전쟁의 권리가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를 상이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롤즈는 말한다. 더불어 질서 정연하지는 않지만 인권을 존중하고 비공격적인 사회인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에 게도 자신의 영토 침략에 대항하여 자기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전쟁의 권리가 주어진다.⁷⁰⁾ 롤즈는 만민법이 무법적 정치체제에 대해 정당한 자기 방어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명심해야 할 목적을 구체화 하고 그 사회들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피해야 하는 수단들을 적시해 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에 따르면 이들에게 자기 방어와 방위는 단지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과제일 뿐, 결국 이들의 장기적인 목적은 모든 사회가 결과적으로 만민법을 존중하고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권은 모든 지역에서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⁷¹⁾

한편 비이상적 이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에 대해 논하고 있다. 롤즈에 의하면, 고통 받는 사회들은 공격적이거나 팽창적이지 않지만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그리고 질서정연해지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과학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적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롤즈는 주장한다. 즉,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 받는 사회들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

70) Rawls, 1999, pp.91-92.

71) Rawls, 1999, pp.92-93.

조의 의무를 실행하는 유일한 혹은 최선의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구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는 추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롤즈는 이러한 명확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원조가 중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들이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들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는 만약 그들의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전통들, 법률, 그리고 재산과 계급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정연해 질 수 있다고 롤즈는 말한다.⁷²⁾

이와 관련해 그가 원조의 의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고통을 겪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 국민의 부의 원인들과 국가가 취하는 형식들은 그들의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근면함과 협력적인 재능들,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의 기본 구조를 지지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전통들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덕목으로 지지된다고 그는 말하면서, 더 나아가 어떤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역사적인 예들로서, 자원 빈국들 (가령 일본)이 매우 잘 운영되는 반면에 자원

72) Rawls, 1999, pp.118.

부국 (가령 아르헨티나)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을 언급하고 있다.⁷³⁾

롤즈는 이처럼 원조와 부의 이전을 등치시키는 기존의 시각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그는 단지 자원 분배만으로는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신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감각한 통치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바꾸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근이 경제재난이지, 단순한 식량위기가 아니라는 아마티아 센 (Amartya Sen)⁷⁴⁾의 논의를 빌려와, 정치적 제도와 사회적 제도 내에 있는 결함과 정책 제정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 즉 정부가 기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국민이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질서 정연한 정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이전이 아닌 인권의 강조가 기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에 속한 유력한 정부들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또한 인권의 존중은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 교육을 받고 이용할 권리,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 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인구 압력 (population pressure)을 완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롤즈는 주장한다. 이는 해당 사회의 경제가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73) Rawls, 1999, pp.108.

74)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s* (Oxford: Clarendon Press, 1989)

정도의 최적 인구 (optimal polulation)로 조정되는 데에 기여한다. 그는 이처럼 고통을 겪는 사회가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돕는 데에 있어 그 초점을 인권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금을 투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제력을 써서는 안 되며, 특정한 충고를 부여할 수는 있다고 지적한다.⁷⁵⁾

현 국가주권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불과 유사하게, 롤즈의 만민법은 만민을 합의의 단위로 여기면서 인류 개개인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는 세계시민적 정의로는 나아가지 않는다. 즉, 그는 계약의 당사자로 개인이 아닌 만민들을 내세움으로써 개인주의적 방법론을 거부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국의 경우에서처럼 국제적 관계에서도 각 개인을 당사자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영구평화론에 나타난 칸트의 선구적 생각을 이어 받아, 세계정부가 세계적인 전제정치 체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지역과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쟁취하려고 투쟁하여 발생하는 빈번한 투쟁 때문에 분열된 취약한 제국을 통치하는 정도의 정치체제로 생각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⁷⁶⁾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정의 원칙을 전지구적 평등주의로 적용코자 한 찰스 베이츠 (Charles Beitz)⁷⁷⁾와 토머스 포거 (Thomas Pogge)⁷⁸⁾의 논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인권을 보

75) Rawls, 1999, pp.109-110.

76) Rawls, 1999, pp.36.

77) Charles Beitz.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78) Thomas Pogge. "An Equalitarian Law of People," *PAPA*, 23:3 (Summer 1994)

호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자유적 제도나 적정 수준의 제도를 성취하려는 그들의 목적들은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정치 문화에서 찾는 그의 견해, 그리고 합의의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만민이라는 그의 원칙으로 인하여, 베이츠와 포저의 논의를 비현실적이며 급진적인 구상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우선 베이츠의 자원재분배원칙 (the resource redistribution principle)⁷⁹⁾과 관련하여, 롤즈는 한 나라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라는 문제에 있어 결정적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그 나라 구성원의 정치적, 시민적 덕목들—이지, 그 나라의 자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 자원의 배분의 우연성은 어떤 곤란함도 야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베이츠의 지구적 분배 원칙 (global distribution principle)⁸⁰⁾과 관련해서는, 원조 의무가 완전하게 충족된 후의 가상적 세계에서든 끝없이 지속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자율성 (political autonomy)의 본질 요소들을 보충하기 위해,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 의무는 정의

79) 베이츠는 자원이 충분한 나라에서 자원 빈국으로 자원이 이전,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태초의 자원 배분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원칙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 사는 개인들이 그들의 불리한 운명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지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경제 여건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80) 베이츠는 롤즈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등 원칙을 전 지구적으로 적용, 원초적 입장에 모든 사회들을 세움으로써 사회들 간의 분배 정의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더 부유한 나라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훨씬 많아서 부유하기 때문에, 지구적 원칙은 자원이 훨씬 많은 나라들의 이익을 자원이 열악한 국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롭고 자유로운 기본 제도나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모든 사회가 갖출 때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포거의 지구적 평등주의 원칙 (global egalitarian principle)⁸¹⁾ 및 이 목적을 위해 운용할 국제 자금을 각 사회가 불입하도록 한 전체 자원 배당 (Global Resource Dividend: GRD) 구상에 대하여는,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적 견해 (cosmopolitan view) 의 궁극적 관심이 개인들의 복지이지 사회의 정의는 아니란 점을 문제로 삼는다.⁸²⁾ 그러나 만민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가는 자유적 사회와 적정 수준의 사회들의 올바른 이유들에 입각한 정의와 안정성이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강조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러한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중요 요인이 정치 문화인가? 이미 고착화 된 구조적 불평등이 절대 빈곤 및 남북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엄연한 현실에 눈을 돌려 보면 어떠한가? 개개인의 삶의 전망에 이미 국내적 기본 구조 (basic structure) 뿐만 아니라 지구적 기본 구조 역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점차 지구화의 심화로 인해 바뀌어 가는 정의의 지평과 현실 변화를 수용하여 정의 논의가 계속 이어질 필요를 자극한다. 국경을 초월하는 자본·상품·지식 및 인류 이동의 증가, 그로 인해 가속화되는 전지구적 통합의 경향과 상호의존성 증대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81) 포거는 롤즈의 차등 원칙을 전 지구적으로 적용, 원초적 입장에 모든 개인들을 내세울 경우 지구 분배 정의 원칙은 이러할 것이라고 논하였다.

82) Rawls, 1999, pp.118-119.

이는 롤즈가 강조하는 상호성의 개념 (the idea of reciprocity)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재고의 필요가 있다. 그가 주장하듯, 한 국가의 정치 문화는 경험적으로 볼 때 국가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원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결코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볼 수 있으며,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국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받는 영향도 커져 가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국가 간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한 구조적 문제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궁극적으로 만민의 사회에 편입시켜 만민이 질서 정연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만민법의 근본적 목표라면, 만민법 도출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상호성 원리에 따르는 원조 의무의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새로이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롤즈에 따르면 상호성의 개념은 정의의 원칙에 의하여 표현된 시민간의 관계이다. 이 정의의 원칙은 사회세계와 관련하여 규정된 적절한 평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 때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세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 기준은, 어떤 조건을 공정한 협력의 가장 합당한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이 조건을 제시한 사람들이, 지배를 받거나 조작 당하거나 불리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압력 하에 있지 않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³⁾ 이는 상호성이 정의의 공적인 정치관에 의해서 표현된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 관계라는 의미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상호성의 요구에 따른다면, 원조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원조가 제공되어야 하고 차단점에 도달

83) Rawls, 1993, pp.20.

하는 순간 그러한 의무가 중단되는 것과 같은 방식은 문제의 일부 밖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착화 된 불공정 구조가 국제사회 내 부익부빈익빈 심화 및 사회들 간 정치적 알력, 초국적 사회 운동 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이것의 부정적 영향력은 물론 책임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만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호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만민법은 보다 큰 그림에서 근본적 부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지속적으로 민감성을 띠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만 한다.

5장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가능성: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근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주권과 인권 사이의 충돌은 국제사회의 질서와 정의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긴장 관계를 표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치의 갈등 구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우선 주권과 인권 개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전통적인 사례인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국제 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주권과 인권의 갈등

공통의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주권원칙은 국가 간의 행위를 규제하며 질서를 제공하여 왔다. 이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 의해 성립된 원칙으로,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 온 국제연합 역시 이러한 주권원칙을 중심 작동 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주권원칙이 과연 인권의 보호를 위한 무력적 개입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논쟁의 중심에 있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공존의 기본

원리로 국가들에게 인정되고 존중되어 온 주권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특히 이러한 상황이 정의의 이름을 내걸고 행해질 경우, 이는 국가들의 민감한 대응과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처럼 질서와 정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은 ‘국가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권이 광범하고 심대하게 침해 받을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국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⁸⁴⁾ 앞서 언급한 국제사회에서의 주권원칙은 기본적으로 무력을 동반한 인도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UN 헌장 제2조 4항인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모든 국가는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기타 UN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및 제2조 7항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이 헌장의 어떤 조항도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태에 간섭하는 것을 수권하지 않는다)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강행규범 (jus cogens)으로 여겨져 왔다. UN헌장 제7장에 의거한 개별적 도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인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 결의나 수권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로지 그러한 참상의 심각성에 의거하여 여

84) J.L. Holzgrefe. 2003.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Debate.” Edited by J.L. Holzgrefe and Robert. O. Keohane.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8.

기에 무력 개입하는 국가 혹은 국제기구의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중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례로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의한 코소보 공습 사건은 30만명을 육박하는 대량 난민 발생과 관련한 인권 유린 참상의 종식을 위한 조치로써 행해진 무력간섭으로, 그 목적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주장되었음에도, UN 안보리 결의 및 수권 없이 행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정당성 및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인도적 개입 문제의 난점은 불에게 있어서도 핵심적 관심 사항이었다. 그는 국가들의 무력 간섭의 실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적법화할 만큼 아직 충분히 연대주의적이지 못하다는 비관적 결론을 내렸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유된 국가 간 이해와 합의점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정의관의 이행을 감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제질서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할 인간적 고통의 수준 (the level of human suffering)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주권 원칙과 비개입 규범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도적 개입의 권리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관념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떠한 합의된 독트린도 부재한 시점에서, 그러한 개입권은 단지 각 국가들에게 양도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라고 그는 보았다.⁸⁵⁾

이러한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통해 질서와 정의 간에 상존하는 긴장 관계를 포착하면서 불은 이 두 가치의 조화를 모색하

85) Hedley Bull,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Oxford: Clarendon, 1984(b)), pp. 193.

여야 함을 역설한다. 그는 과연 무엇이 ‘세계적 공동선 (world common good)’ 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대적인 대화에 선진 산업 국가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후발 국가들 모두가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후발 국가들의 부의 재분배 및 정당한 권력의 배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하고,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인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⁸⁶⁾

과연 인권이란 무엇인가? 현대 철학에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은 크게 구조적 방식 (structural account)과 내용적 방식 (substantive account)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가 포괄적인 도덕 이론을 설정하고 이러한 틀 내에서 그 일부로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라면,⁸⁷⁾ 후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 자체가 유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 규범 (minimum morality)으로서 인권에 대해 해명하는 방식이다.⁸⁸⁾ 만민법에서 국제사회의 정의의 기초로서 인권을 제시하는 롤즈의 입장은 이중 후자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만민법에 적용되는 인권은 노예제와 농노제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 대량학살과 인종학살로부터 인종집단의 보호와 같은 긴급한 권리들로 이루어진 특수한 부류의 권리를 의미한다. ⁸⁹⁾ 이러한 인권은 합당한 만민법에서 특별한 역할

86) Bull, 1984(a), pp.13.

87) James Griffi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20-26.

88) James Nickel,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p.39.

89) Rawls, 1999, pp.79.

을 하는 일련의 권리들로, 전쟁과 전쟁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들에 대한 제약기준이 됨과 동시에 정치체제의 대내적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⁹⁰⁾

그의 논의에서 인권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도덕적 인격체라든지 혹은 인간은 천부적인 도덕적 • 지적 능력에 따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인 도덕적 원리나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⁹¹⁾ 이는 불이 도덕적 문제 (특히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에의 접근에 있어 자연법 원리에 호소하는 것은 적합한 방식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들은 특정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그 적합성을 승인하는 도덕적 규칙들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언급한 것⁹²⁾과 맥이 닿는다. 이는 불이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국가들이 노정하는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 이질성, 저마다의 윤리관, 다양한 신념 체계 등과 같은 다원주의적 현실의 기반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은 물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가졌음을 방증하는 것인데, 이는 롤즈의 현실 인식 및 논의의 출발점을 이루기도 한다. 롤즈에 따르면 종교개혁 이후 시작되는 근대사회의 특징은 인간 이성의 자유로운 발현에 의해 대립적인 포괄적 신념체계들이 다양하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이와 더불어 근대성은 자유주의의 정치제도의 수립을 통해 어느 정도 조화롭

90) Rawls, 1999, pp.80.

91) 유흥립, “인권의 보편성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1:1 (2001), pp.85-86.

92) Hedley Bull, “Natur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5 (1979), pp.181.

고 안정적인 다원적 사회의 유지를 가능케 하였다. 롤즈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주의는 상반되지만 각각 납득할 만한 다양한 포괄적 신념체계들의 다원주의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지속성이 있는 자유주의적 제도 하에서 인간 이성의 활용이 초래하는 필연적 결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이들 신념체계가 합당하다(reasonable)함은 이들 간에 기본적 사회규범에 관한 합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신념체계들에 대한 중립성(neutrality) 및 공정성(impartiality)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 되어야 하며, 그의 정의에 관한 '정치적' 개념화는 바로 근대적 상황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최우위성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⁹³⁾ 롤즈는 만민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사회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 사회가 반드시 서구적인 자유주의 사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 즉, 자유주의적인 사회와 위계적인 사회들이 동일한 만민법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 만민법은 서구적 전통의 특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이론의 권위는 실천이성의 권리들과 관념들에 기초한다.⁹⁴⁾ 이러한 견지로 그는 만민 상호 간의 관계에 적합한 정치적 옳음과 정의에 관한 합당하고 작동 가능한 관점을 발전시켜 우리의 희망을 지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정의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을 발전시켰다.⁹⁵⁾ 정치적 정의관이란, 공적 행위에서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점으로 민주적 시민 사이에

93) 유흥립, 2001, pp.86.

94) 유흥립, 2001, pp.88.

95) Rawls, 1999, pp.22-23.

서 공적 정당화의 기반이 되는 토대를 의미한다. 롤즈는 이런 정치적 정의관을 통해서만 서로 다른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 (comprehensive doctrine)를 따르는 시민들이 상호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중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⁹⁶⁾ 그러면서 그는 다음의 몇 가지 현실들의 존재가 더 큰 정치적 자유와 정의를 줄 것이라는 점을 보인다. 첫째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이다. 이는 인간 이성과 자유가 지속된 결과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징이다.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이 존재하는 다원성은 바로 자유로운 제도가 있는 사회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정상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이러한 다원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결속의 현실이다. 입헌 민주주의에서는 정치, 사회적 결속에 있어 하나의 포괄적 교리를 통한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공적 기반을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들의 합당성과 합리성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적 이성의 현실이다. 다원주의적 자유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화해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들에 근거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거나 상호 이해에 근접조차하기 힘들다. 따라서 시민들은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을 논의할 때 포괄적 교리들에 호소하지 않아야 하며 옳음과 정의에 대한 일군의 합당한 정치관들에 호소하는 한편, 시민의 자격이 있는 시민들에게 제시되는 정치적 합당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⁹⁷⁾ 롤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당한 만민의 사회의 결속은 종교적

96) 롤즈는 ‘포괄적’이라는 말을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막론하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적용되는 개인의 신념이 바로 포괄적 교리를 의미한다. 이 신념에 근거해 합당한 개인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97) Rawls, 1999, pp.124-125.

결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⁸⁾ 종교적이거나 철학적, 도덕적인 결속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에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 안정성이 단순히 잠정적 타협 (modus vivendi)이 아니라면, 사회적 안정성은 포괄적 교리들 간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지지되는 옳음과 정의라는 합당한 정치적 관점에 뿌리를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롤즈의 인권 논의는 만민 사회 전반에 걸쳐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보편적 인권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인권 항목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서구 • 비서구, 자유주의 • 비자유주의 사회들 각각이 갖는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인권의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를 펴고 있다. 이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위에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그리고자 하는 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정체와 적정 수준의 위계 정체가 모두 존중하는 인권 항목들은 만민법에 본질적이며, 그것들이 특정 지역에서 지지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정치적 • 도덕적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모든 사회들에 확장 적용되고, 이것들은 무법 국가를 포함한 모든 만민들과 사회들에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최소주의적 접근은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 상대주의 간의 긴장 속에서 더 나은 인류사회를 위한 실천적 원칙을 도출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합의 가능 영역을 협소화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베이츠 (Charles

98) Rawls, 1999, pp.18-19.

Beitz)에 따르면, 롤즈의 인권 개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여타 협약에서 규정하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인권 목록 보다 협소하다. 예를 들면,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19조 및 20조), 민주적 정치참여권 (세계인권선언 21조) 등이 그것이다.⁹⁹⁾

인권은 어느 특정 사회의 법률이나 관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향유하게 되는 특별한 권리이다. 즉 세계인권선언 (1948) 제1조가 말해주듯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유념할 점은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이 확립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개념 자체, 그리고 이것이 갖는 보편성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에 기인한다.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위에서 현존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들을 포괄하면서 인권 보편성을 찾으려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레짐들이다. 이는 인권에 대한 현존하는 합의가 결코 정태적이거나 완결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현실 및 인식 변화의 반영에 의해 얼마든지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99) Charles Beitz. "Rawls' s Law of Peoples." *Ethics*. Vol. 110. No.4 (2000), pp. 684.

2. 질서와 정의의 상보성

실제로 인권의 의미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최근 인권을 보다 넓은 범주의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각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영토 및 국가이익의 수호, 물리적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협소한 범주를 가졌던 안보 개념에서, 이제는 "국민의 신체적 안보, 물리적 안보, 경제적 · 사회적 복지 보장,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존중 및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개념"¹⁰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유엔개발계획 (UNDP)은 인간안보의 기본성격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간안보는 보편적인 관심사로 빈국과 부국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권 침해, 마약, 환경오염, 범죄 등 인간 안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인간안보는 국제적 관심사로 인간안보의 위협이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인간안보는 초기 예방이 사후 개입보다 중요하다. 질병과 인종분규 등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안보는 인간 위주이다. 이같이 인간안보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인간의 선택을 보장하고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핵 위협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위험성은 오히려 증대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빈곤과 부의 불평등은 테러의 중요 요인으로 국경을 넘어 국제적 불안정의 요인이 되

100)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원, 2004), pp.18.

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 개념은 인간안보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인간발전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¹⁾

이처럼 인권과 안보를 결합시키는 접근방식은 롤즈의 인권 개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선 롤즈의 협소한 인권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주권 자체를 인권 수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치환함으로써 주권과 인권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롤즈의 논의에 의거하면 인권과 주권이 상충할 여러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베이츠가 지적한 바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인권을 위반하는 무법국가에 대한 자유주의 국민 및 적정수준의 국민들의 불관용에 대한 롤즈의 주장이 무법국가가 공격적이며 위험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음을 들면서, 이는 무법국가가 자신의 방식을 변화하도록 만들거나 이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킨다면 모든 국민들이 훨씬 안전하다는 논리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베이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내적으로는 인권을 위반하는 압제적이면서 국제행위에서는 공격적이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정치체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⁰²⁾ 이 경우 이러한 체제에 대한 개입 및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인권과 국가의 주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롤즈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이는

101) 최의철, 2004, pp.20-21.

102) Beitz, 2000, pp. 685.

롤즈가 타 정체에 대한 개입을 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권리’ 로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를 보다 구체화 하면,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의 팽창주의적 목표가 질서정연한 정치체제의 안보와 자유 제도를 위협하고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 대항해 정의 전쟁을 행할 수 있는 개입권이라고 볼 수 있다.¹⁰³⁾ 그는 인권을 위반하는 무법 국가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만 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뿐만 아니라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¹⁰⁴⁾ 그러나 이러한 제재와 간섭이 그러한 ‘권리’ 를 행사할 주권 국가의 판단과 역량 혹은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인권 수호를 위한 제재와 간섭은 사실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혹은 정치적 이익, 특히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이는 불이 지적인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인간적 정의에 대해 선택적이고 모호한 환영의 태도를 보이는 주된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를 비판하는 세계시민적 칸트주의자들은 롤즈의 만민법 체계가 내포하는 도덕적 구속력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롤즈의 만민법 체계에서 인도적 개입의 근거가 되는 제6조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의 조항은 “~해야 한다” 형태의 적극적 의무 (positive duty)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만민법을 구성하는 8개 조항은 이러한 형태의 적극적 의무 혹은 “~할 수 있다” 와 같은 형태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적극적’ 이라는 단어가 갖는 일반적인 느낌과는 달리 칸트주의자들에게 ‘불완전한 의무 (imperfect duty)’ 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칸트 윤리학에서 불완전 의무는 “첫

103) Rawls, 1999, pp.95.

104) Rawls, 1999, pp.81.

째,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의무, 둘째, 법적, 사회적 제재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의무, 셋째, 특정한 권리의 청구인을 명시할 수 없는 의무”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불완전 의무로서의 적극적 의무는 의무의 내용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 의무는 의무의 내용과 대상이 명시될 수 있고 의무 불이행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무로서 “완전한 의무 (perfect duty)”에 해당된다. 소극적 의무는 주로 ‘다른 이와 의 약속을 어기지 말라’, ‘다른 이에게 부당하게 해를 끼치지 말라’와 같은 ‘금지’의 형태를 취한다.¹⁰⁵⁾ 적극적 의무로서의 인권 보장 의무가 이러한 소극적 의무의 형태로 치환될 경우 인간적 정의의 보호가 현실에서 선택적·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고질적인 난점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는 그러한 의무 이행의 기준과 절차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도덕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 인권 탄압이 초국경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인접국 간 충돌, 대량 이민 발생 및 월경 문제, 난민 발생 등 국제 문제로 쉽게 파급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권 보장의 의무를 국가와 국제사회에 보다 강하게 지을 이유도 충분하다. 결국 인권은 정의의 달성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보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인간안보를 통한 인권 논의는 국제사회의

105) 김준석, "국제원조의 윤리학에 대한 소고: 토마스 포제와 존 롤즈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2009), pp.12.

공동 대응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는 주권을 인권의 상위에 있는 위계적 개념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관심사인 인간의 안위를 보장한다는 ‘책임’ 내지는 ‘의무’로 치환한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만일 국가가 자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할 경우 그러한 의무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넘겨받아 행한다는 보호의무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성립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2011년 3월 17일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진 사례는 주권국의 보호의무 이행 실패를 이유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가 고안한 보호의무 개념은, 주권을 자국 국민을 통솔할 권한 내지 권리가 아닌 영토 내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로 재해석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합리적 국가 주권 개념에 대해 합당성에 의거하여 제한을 가한 롤즈의 만민 개념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인식이다. 여기에는 단지 권리가 아닌 의무, 나아가 특히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호의무 개념에 따르면 주권은 “대외적으로 타국의 주권을, 국내적으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는 물론 “피할 수 있는 재앙-대량 살해, 성폭력, 기아-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극적 의무까지도 포함한다.¹⁰⁶⁾ 이러한 인식은 의무의 내용과 대상 및

106)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Canada: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2001), pp.8.

그 불이행에 따르는 책임을 보다 명확화 할 수 있게 한다. 보호의무 개념은 현실적으로 법적 강제성을 결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들 간 논쟁 과정에서 그 효용 및 정당성에 대해 비판 받고는 있으나, 이러한 패러다임을 통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기반이 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불이 예전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세계정부 수립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무정부 사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전되고 여러 사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현존 국제체제는 계속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실성 있는 국제 질서 및 정의 유지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이를 주권에 어떻게 앞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주권이 인권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 및 주권 개념의 협소함 및 이들 간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인간사에서 대두되는 문제이고 다분히 가치 판단적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합당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정의 문제로 생겨나는 난점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제 영역에 병존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한 선결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질서와 정의 간의 충돌 문제가 결코 해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6장 결론

세계화·지구화의 진전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 질서와 정의에 대한 연구는 변화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며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국제 관계의 궤적을 읽는 역사 해석적 연구와 국제 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정치철학적 연구는 상호 동떨어져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 평화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적인 문제이자 함께 구성해 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시대의 현주소를 해석·파악하고 바람직한 진일보를 위한 향배를 고찰함에 있어서 양 영역 간 보완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다.

불은 국제 관계의 역사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도 및 작동 원리를 포착하면서 국제사회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의 관념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 프레임 속에서 질서와 정의의 가치를 조화시켜 가기 위한 다양한 사고와 접근 방식의 결합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롤즈가 제시한 국제사회 정의 원칙의 합의 방안이라는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의 구상은, 이러한 규범적 과제를 해결해 가는 데에 있어 하나의 답안이 될 수 있다. 물역사적이고 선형적인 도덕적 질서의 일부로서가 아닌 실천 이성의 작용에 근거한 구성적 절차의 결과로서의 정치적 정의 원칙들을 도출해 내는 롤즈의 만민법 구상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권력과 도덕, 질서와 정의 등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딜레마를 국제정치의 현실

적 조건으로 인정하고 현실의 점진적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불의 접근방식과 유사하다.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의 윤곽을 그려 나가기 위한 작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기초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향의 지향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흘러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역사 해석적 접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주의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단지 공허한 망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접근방식의 결합에 기반한 이상적인 정의관의 구상은, 국제 질서가 단지 아슬아슬한 잠정적 타협에 머물러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대안으로서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할 것이다.

국제 질서와 정의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우선 정치철학 영역에서 국제 정의에 대한 연구에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으로 평등의 지평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다. 이는 국가 간의 경계가 보유하는 도덕성의 위상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 대외원조를 비롯한 분배 정의의 문제를 주권 국가들이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Equality of What)?"¹⁰⁷⁾와 관련한 논쟁이 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

107) Amartya Sen, "Equality of What?", *Liberty, Equality, and Law*, ed. Sterling M. McMurrin,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87) 아마르티아 센이 "무엇의 평등인가?"를 내면서 촉발한 논쟁으로, 참여자들은 정의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저마다의 특수한 해석에 대해서 논의에 몰두해 왔다. 즉,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정의로운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로서 권리, 자원, 기본적 가치 (primary goods), 기회, 진정한 자유, 능력 등 중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합당한가에 관한 논쟁이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등인가 (Equality among Whom)? "108) 와 같은 보다 다각적인 논의들이 등장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국제 정의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 문제를 넘어, 지구화 되고 있는 세계에서 기존의 '잘못 설정된 틀 (misframing)' 109)을 혁파함으로써 정의의 내용과 주체 모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점차 복잡다단하게 얽혀 가는 탈국가적·초국경적 이슈, 그리고 눈에 띄게 증가해 가는 비국가 행위자들은 기존의 전통적 정의 구상 틀의 범주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의 당사자인 이들을 편입시키고 기존의 정의 논의 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제사회 연구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역사 해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학파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국가체제에서 강대국뿐 아니라 기타 세계를 포괄한 공통이해에 기반 해야만 경제적, 사회적 정의와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불의 당부

108)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계시민주의자들, 국제주의자들, 자유주의적 국가주의자들의 세 진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진영에서는, 외국의 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비교해 자국 국가의 동료시민들에 대한 관심에 특별성을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의는 지구상 모든 개개인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두 번째 진영에서는 특정 정치공동체 내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 강력한 일부 정의 요구들에 대해 그 공동체 내부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진영에서는 공동의 헌법, 공유된 역사적 정체성, 윤리의식 등과 같은 도덕적 위상을 보유한 공동체 내부에서만 정의의 요구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109) Nancy Fraser,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Polity Press Ltd., Cambridge. 2008)

를 이어 받아, 새로운 국제 제도 및 행위자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처럼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규범성에 대한 논의를 연계시킴으로써, 전지구적 환경 혹은 국제 경제와 같은 공동의 사안과 인권 또는 정치적 민주화와 같은 공동 가치를 실질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는 등¹¹⁰⁾ 국제 질서에 대한 연구 또한 진화해 가고 있다. 이처럼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여 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러한 기반으로부터 출발하는 국제 질서 및 정의의 상호 연계적 연구는, 무정부 상태가 단지 혼돈 (chaos)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더불어 질서와 정의의 공존, 나아가 정의로운 질서 수립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공통의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사회’가 지속되는 한, 국제질서와 국제 정의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국가와 인류의 공통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국제 질서 와 정의의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위하여 중요한 핵심은 인권의 수호와 주권의 존중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와 같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 인권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110) Kai Alderson and Andrew Hurrell, "Bull's Concep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 Kai Alderson and Andrew Hurrell (eds.), *Hedley Bull on International Society* (Houndmills: Macmillan Press, 2000)

이를 통해 인권 및 주권 개념의 협소성 및 이들 간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상호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질서와 정의 간 충돌 문제와 딜레마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 간 조화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ibliography

1) 헤들리 불의 주요 저작 및 논문

1961. *The Control of the Arms Race :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in the Missile Age*. Praeger.

1966. "The Grotian Concep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Edited by H. Butterfield and M. Wight. *Diplomatic Investigations: Essay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Allen and Unwin.

1966. "International Theory: The Case for a Classical Approach." *World Politics* 18 (3).

1977. *The Anarchical Society :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번역본) 2012. 『무정부 사회: 세계정치에서의 질서에 관한 연구』, 진석용 옮김. 나남.

1979. "The State's Positive Role in World Affairs." *Daedalus* 108 (4).

1979. "Recapturing the Just War for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31 (4).

1979. "Natur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5.

1982. "The West and South Africa," *Daedalus* 111(2).

1983. "The International Anarchy in the 1980s." *Austrian Outlook* 37:3.

1984.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Clarendon.

1984. "Jus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agey Lectures*. University of Waterloo.

Bull, Hedley and Watson, Adam. 1985.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ull, Hedley and Louis, WM. Roger. 1986. *The 'Special Relationship' : Anglo-America Relations since 1945*. Clarendon.

Bull, Hedley, Kingsbury, Benedict, and Roberts, Adam. 1990. *Hugo Grotiu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larendon.

2) 존 롤즈의 주요 저작 및 논문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번역본). 2003.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1978. “The Basic Structure as Subject.” *Values and Morals*. Edited by Goldman, Alvin I. and Jaegwon, Kim. Dordrecht: D. Reidel.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번역본). 1998.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

1999. *The Law of Peoples with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번역본). 2009. 『만민법』 장동진 외 옮김. 아카넷.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dited by Erin Kel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번역본). 1988.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옮김. 서광사.

3) 국내 연구

김만권. 2004.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서울: 개마고원.

김준석. 2009. "국제원조의 윤리학에 대한 소고: 토마스 포제와 존

- 롤즈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 마상운. 2008.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세계정치 10』 제29집 2호.
- 목광수. 2010. "존 롤즈의 관용 개념 고찰: 지구촌 사회에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61집 제3권.
- 양오석. 2006. "유럽통합연구의 새로운 분석틀: 영국학파 (The English School)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럽연구』 제24호.
- 장동진. 2001.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 만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 장동진, 장휘. 2003. "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도덕적 기획과 정치적 기획". 『정치사상연구』 9집.
- 장인성. 2006. "영국학파 국제사회론과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사회화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1호.
- 정태욱. 2001. "롤즈의 국제정의론- 만민법을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7권 제1.2호.
- 최기성. 2009. "롤즈 '만민법'의 사상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 황영주. 2007.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의 중도 (via media)?: 영국학파 다시 보기". 『국제정치연구』 제12집 2호.

4) 해외 연구

Alderson, Kai, and Hurrell, Andrew. 2000. *Hedley Bull on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Macmillan.

Alejandro, Roberto. 1998. *The Limits of Rawlsian Justi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eitz, Charles. 2000. "Rawls' s Law of Peoples." *Ethics*. Vol. 110. No.4.

Bankovsky, Miriam. 2012. *Perfecting Justice in Rawls, Habermas, and Honneth : A Deconstructive Perspective*. Continuum.

Baynes, Kenneth. 1992. *The Normative Grounds of Social Criticism : Kant, Rawls, and Haberma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Brooks, Thom and Freyenhagen, Fabian. 2005. *The Legacy of John Rawls*. Continuum Studies in American Philosophy.

Buchanan, Allen. 2000. "Rawls' s Law of Peoples: Rules for a Vanished Westphalian World." *Ethics* 110.

Buzan, Barry. 2004. *From International to World Society?: English School Theory and the Social*

Structure of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therine Audard. 2007. *John Rawls*.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Corlett, J. Angelo. 1991. *Equality and Liberty : Analyzing Rawls and Nozick*. St. Martin's Press.

Davion, Victoria and Wolf, Clark. 2000. *The Idea of a Political Liberalism : Essays on Rawls*. Rowman & Littlefield.

Dunne, Timothy. 1998. *Inventing International Society: A History of the English School*. Basingstoke, UK: Macmillan.

Finlayson, James Gordon and Freyenhagen, Fabian. 2011. *Habermas and Rawls : Disputing the Political*. Routledge.

Freeman, Samuel. 1999.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03.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7. *Rawls*. Routledge.

_____. 2007. *Lectures o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 John Rawl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Hayfa, Tarek. 2008. *The Problem of Public Justification in Political Philosophy : Rawls, Rorty and Habermas*. VDM Verlag Dr. Müller.

Heath, Joseph. 2007. "Rawls on Global Distributive Justice: A Defenc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Supplementary Volume*. Lethbridge: University of Calgary Press.

Hedrick, Todd. 2010. *Rawls and Habermas : Reason, Pluralism, and the Claims of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University Press.

Herman, Barbara. 2000.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 John Rawls*. Harvard University Press.

Kukathas, Chandran and Pettit, Philip. 1990. *Rawls : A Theory of Justice and Its Critics* , Stanford University Press.

Kukathas, Chandran. 2003.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Law of Peoples*. Routledge.

Lehning, Percy B. 2009. *John Rawls :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klater, Andrew, and Suganami, Hidemi. 2006.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temporary Reassessmen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klater, Andrew. 2009. "The English School."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ited by Scott Burchill, Andrew Linklater, Richard Devetak.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Little, Richard and Williams, John. 2006. *The Anarchical Society in a Globalized World*. Palgrave Macmillan.

Little, Richard. 2000. "The English School'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6.3.

Maffettone, Sebastiano. 2010. *Rawls : An Introduction*. Polity.

Mandle, Jon. 2009. *Rawls's A Theory of Justice :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tin, Rex and Reidy, David. 2006. *Rawls's law of peoples : A Realistic Utopia?* Blackwell Pub.

Miller, J.D.B. and Vincent, R.J. 1990. *Order and Violence: Hedley Bull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Moellendorf, Darrel. 1996. "Constructing the Law of People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77.

_____. 2002. "Rawlsian Constructivism and Cosmopolitan Justice. *Cosmopolitan Justice*, Boulder, CO: Westview Press.

O'Neill, Robert J. and Schwartz, David N. 1987. *Hedley Bull on Arms Control*. Macmillan.

Pettit, Philip. 2005. "Rawls' s Political Ontology"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4.

Pogge, Thomas. 1989. *Realizing Rawls*.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1993. "An Egalitarian Law of Peopl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3.

_____. 1994. "An Equalitarian Law of Peoples." *PAPA* 23:3 Summer 1994.

_____. 2001. "Rawls' s International Justice." *Philosophical Quarterly* 51/203.

_____. 2002.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2004. "The Incoherence Between Rawls' s Theories of Justice." *Fordham Law Review* 72.

_____. 2007. *John Rawls : His Life and Theory of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Reath, Andrews, Herman, Barbara, and Korsgaard, Christine M. 1997. *Reclaiming the History of Ethics : Essays for John Raw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idy, David. 2004. "Rawls on International Justice: A Defense." *Political Theory*, v. 32.

_____. 2007. "A Just Global Economy: In Defense of Rawls." *The Journal of Ethics*, v. 11.2.

Reus-Smit, Christian. 2002. "Imagining Society: Constructivism and the English School."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Volume 4, Issue 3 (October 2002).

_____. 2009. "Constructivism and the English School." edited by Cornelia Navari, *Theorising International Society: English School Methods*. Palgrave Macmillan.

Richardson, Henry S. and Weithman, Paul J. 1999. *The Philosophy of John Rawls*. New York, NY: Garland.

Taylor, Robert S. 2011. *Reconstructing Rawls : the Kantian Foundations of Justice as Fairnes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Thatcher, Meredith and Bell, Coral. 2008. *Remembering Hedley*. ANU E Press.

Vigizzi, Brunello. 2005. *The British Committee o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ilan: Edizioni Unicopli.

Voice, Paul. 2013. *Rawls Explained: From Fairness to Utopia*. Open Court.

Weber, Eric Thomas. 2010. *Rawls, Dewey, and Constructivism*. London: Continuum.

Weithman, Paul. 2010. *Why Political Liberalism? : On John Rawls's Political Turn*.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John. 2010. "Hedley Bull and Just War : Missed Opportunities and Lessons to Be Learne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6 (2).

Young, Shaun P. 2009. *Reflections on Rawls : An Assessment of His Legacy*. Ashgate.

5) 기타 문헌

송기돈. 2002. "국제정치의 '사회성 (Sociality)'에 관한 이론적 분석: 국제시스템과 국제사회론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2호.

신윅희. 2008. "동아시아 국제이론의 모색-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정치10』 제29집 2호.

안문석, 송기돈. 2011. "국제정치이론의 로제타스톤 무정부성 (Anarchy)에 관한 이론적 분석: 비판적 평가와 발전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유홍림. 2001. "인권의 보편성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1:1.

임경석. 2008. "세계화 시대의 정의: 분배정의와 전 지구적 법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15호 2008.4.

장인성. 2008.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을 찾아서-방법론적 성찰". 『세계정치10』 제29집 2호.

최의철. 2004.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원.

Aron, Raymond. 1966. *Peace and War*. Garden City: Doubleday.

Art, Roberth and Jervis, Robert. 1991. *International Politics: Enduring Concepts and Contemporary Issues*. Boston: Harper Collins.

Beitz, Charles. 1979.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llamy, Alex J. 2005.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Cr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9.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Global Effort to End Mass Atrocities*. Cambridge: Polity.

_____. 2011. *Global Politics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From Words to Deeds*. London: Routledge.

Brown, Chris. 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Normative Approaches*. Harvester Wheatsheaf.

Butterfield, Herbert and Wight, Martin. 1966. *Diplomatic Investigations : Essay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llen & Unwin.

Cox, Robert.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 (2).

Fraser, Nancy.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Polity Press Ltd., Cambridge.

Griffin, James. 2007.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Grotius, Hugo. 1993. *The Rights of War and Peace*. 1993. trans. A. C. Westport, CT: Hyperion.

Habermas, Jürgen. 1992.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MIT Press.

Halliday, Fred. 1996.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ears and Hopes." edited by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s Zaleski.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bbes, Thomas. 1991. *Leviath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zgrefe, J.L. 2003.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Debate." Edited by J.L. Holzgrefe and Robert. O. Keohane.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Touchstone Book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Canada: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Kant, Immanuel. 1795. *Political Writings*. Edited by Hans Rei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7.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Filiquarian Publishing, LLC.

Luard, Evan. 1990. *International Society*. Basingstoke: Macmillan.

Pogge, Thomas. 2000. "The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Journal of Ethics* 4, no. 1.

Puchala, Donald J. 2000. "Making a Weberian Moment: Out Discipline Looks Ahead"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1. No.2.

Rousseau, Jean-Jacques. 1762.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London: J. M. Dent & Sons Ltd.

Sen, Amartya. 1980. "Equality of What?" . Edited by Sterling McMurrin. Vol. 1 of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87. "Equality of What?". Edited by Sterling M.Mcmurrin. *Liberty, Equality, and Law*.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_____. 1989. *Poverty and Famines*. Oxford: Clarendon Press,

_____. 2000.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_____. 2009. *The Idea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ickel, James. 1987.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tern, Geoffrey. 2000.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inter.

Watson, Adam. 1992.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Routledge.

Taylor, A.J.P. *Rumours of Wars*. London: Hamish Hamilton.

Wenar, Leif. 2002. "The Legitimacy of Peoples." Edited by P. de Greiff and C. Cronin. *Global Justice and Transnational Politics*. Cambridge, MA: MIT Press.

Wight, Martin. 1966. "The balance of power."

Diplomatic investigations: Essay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Edited by H. Butterfield and M. Wight. London: Allen and Unwin.

_____. 1985. *A Política Do Poder.* Edited by Hedley Bull and Carsten Holbraad. Brasília: UNB.

_____. 1991. *International Theory: The Three Traditions.*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Yosef, Lapid. 1989.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Abstract

Order and Justi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edley Bull and John Rawls

Lim Seonh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 just international order can be derived from the analysis on the theories of Hedley Bull and John Rawls. As long as the anarchical society without a common world government exists, how to reconcile order and justice will continue to remain as a persistent and intractable issue for all countries and human beings: all the more so when considering that

failed justice increasingly threatens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n real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out realistic solutions to harmonize order and justice from a variety of theoretical approaches and perspectives. The dual perspective which this study adopts is the combination of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es, which aims to grasp the connection between facts and norms.

The key to achieve a just international order would be to establish the conception of sovereignty embracing and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should not be conceived as a mere priority issue any longer.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overcome the limited conception of sovereignty and the conflicting design of order versus justice.

Keywords: International Society, Order, Justice, Hedley Bull, John Rawls, Humanitarian Intervention

Student Number: 2011-23178